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 · 권 울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Ⅰ 서 언 Ⅱ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개발목표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의 달성 시한을 1년 앞두고 2015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2015년 9월까지 새로운 개발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목표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밀레니엄개발목표가 채택되었던 2000년 이후 전 세계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했으며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가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개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Post-2015 논의는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이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재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재원의 출처와 조성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의제와 개발재원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분석을 토대로 Post-2015 체제와 개발재원 확대를 연결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개발재원 측정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을 반영, ODA의 정의를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출처와 지원수단을 다양화하여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문헌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연구에 포함된 정책제언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 도출에 앞서, 우리나라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성을 다른 DAC 회원국과 비교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지원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권 올 박사, 정지선·이주영 전문연구원, 송지혜·유애라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장, 정성춘·강유덕 박사, 기획재정부 지광철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최정훈 팀장, 경희대 손혁상 교수와 박복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통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일원이자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 Ⅰ 국문요약 Ⅰ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

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차 례

Ⅰ 서언 .....	3
Ⅰ 국문요약 .....	5
Ⅰ 제1장 서론 .....	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
2. 연구 방법 및 구성 .....	21
Ⅰ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자원 수요 .....	25
1. Post-2015 의제 설정 .....	27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	30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	31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	34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자원 규모 .....	36
가. 자원수요 추정방식 .....	37
나. 자원규모 예상범위 .....	40
Ⅰ 제3장 개발자원 논의 동향 및 쟁점 .....	45
1.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논의 경과 .....	46
2. 개발자원의 유형별 추이 .....	49
3. 개발자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	53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	54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	57
다. 증여등가액 도입 .....	65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	67
마. 수원국 관점 .....	73
<b>Ⅱ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b>	<b>79</b>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	81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	84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	84
나. 독일 .....	88
다. 프랑스 .....	94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	103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	103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	107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	110
<b>Ⅱ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b>	<b>117</b>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	118
가. 개발재원의 구성 .....	118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	120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	128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130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	130
나. 민간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	133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	139
<b>Ⅱ 제6장 요약 및 결론 .....</b>	<b>143</b>
<b>Ⅱ 참고문헌 .....</b>	<b>149</b>

부록 .....	157
Executive Summary .....	169

## 표 차례

표 2-1.	Post-2015 의제 설정 관련 주요 동향 .....	27
표 2-2.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안) .....	35
표 2-3.	계량모형을 활용한 이용 투자수요 추정 연구 .....	37
표 2-4.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수요 추정 연구 .....	38
표 2-5.	성장모형을 활용한 투자수요 추정 연구 .....	39
표 2-6.	부문별 투자수요 추정 연구 .....	40
표 2-7.	온실가스 감축 비용 추정치 .....	42
표 3-1.	시나리오별 ODA 규모 비교 .....	56
표 3-2.	할인율에 따른 증여율 비교 .....	60
표 3-3.	IMF의 저소득국 지원 프로그램의 양허성 조건 .....	64
표 3-4.	ODA 중 행정비용·공여국 내 지출·난민지원 비중 .....	72
표 3-5.	소득 수준별 개발재원 유입 현황(2011) .....	75
표 4-1.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비양허성 지원 규모 및 비중 .....	85
표 4-2.	주요 개발금융기관이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 현황 .....	87
표 4-3.	독일의 개도국 금융협력 현황 .....	90
표 4-4.	KfW 금융협력 수단별 지원조건 .....	93
표 4-5.	AFD의 역할과 성격 .....	94
표 4-6.	AFD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	102
표 4-7.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	104
표 4-8.	기후변화 관련 다자기금 현황 .....	105
표 4-9.	주요 국가 및 기관의 기후재원 공약 사항 .....	107
표 4-10.	기후변화 관련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금융기관 프로그램 .....	112
표 5-1.	우리나라 개발재원 유형별 규모 .....	118

표 5-2. 공여국의 차관지원 조건 비교 .....	123
표 5-3. 우리나라 기타공적재원(OOF) 유형별 규모 .....	127
표 5-4. 우리나라와 DAC 회원국 평균 민간증여 규모 비교 .....	127
표 5-5. 우리나라 ODA 상위 수원국 개발재원 유형별 규모 .....	129
표 5-6.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개입 유형 .....	132
표 5-7. 일본 PSIF 차관과 ODA 차관 .....	137

## 그림 차례

그림 2-1.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	29
그림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투자수요 범위 .....	44
그림 3-1.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	50
그림 3-2.	DAC 회원국의 ODA 추이 .....	52
그림 3-3.	DAC 회원국의 실질 ODA 증가율 .....	52
그림 3-4.	할인을 선택 방식 .....	62
그림 3-5.	개발재원의 증여등가액 측정 방식 .....	66
그림 3-6.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증여등가액 방식 vs. ODA/GNI .....	67
그림 3-7.	ODA와 총 공적개발지원(TOSD) .....	68
그림 3-8.	ODA · TOSD · 개발재원 .....	69
그림 3-9.	TOSD의 대상 범위 .....	70
그림 3-10.	DAC 회원국의 소득수준별 개발재원 제공 현황 .....	74
그림 4-1.	2012년 개도국 유입 개발재원의 유형별 비중 .....	82
그림 4-2.	보증 활용 방식 .....	84
그림 4-3.	국제금융기구의 분야별 지원 현황 .....	86
그림 4-4.	위험도 및 자본 조달비용에 따른 자금 유형 .....	88
그림 4-5.	KfW의 금융협력 수단 .....	89
그림 4-6.	KfW 금융협력 수단별 지원비중 .....	90
그림 4-7.	KfW 개발차관 규모 및 재원출처 .....	92
그림 4-8.	AFD 금융협력 수단별 지원규모 변화 .....	96
그림 4-9.	AFD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98
그림 4-10.	AFD 재원출처 및 지원수단 .....	99
그림 5-1.	우리나라 개발재원 유형별 비중 변화 .....	119

그림 5-2. 최근 3년간 DAC 회원국의 민간개발재원 규모 .....	120
그림 5-3. ODA 유형별 지원 비중 .....	121
그림 5-4. 우리나라 양자 ODA의 분야별 지원 추이 및 비중 .....	125
그림 5-5. 소득수준별 ODA 지원 비중 .....	126
그림 5-6. 우리나라 ODA 상위 수원국 개발재원 유형별 비중 .....	128
그림 5-7. EDCF 보증제도 .....	134

##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원칙 .....	30
글상자 3-1. 2012년 DAC 고위급회의 주요 내용 .....	54
글상자 3-2. DAC의 ODA 현대화 논의 동향 .....	57
글상자 3-3. 상업참고금리(CIRRs) .....	65
글상자 3-4. 2014 OECD 개발재원 워크숍 주요 결과 .....	76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제사회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2015년 이후 전개될 개발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글로벌 환경변화와 도전과제를 반영한 중장기 비전을 담게 될 것이다. 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빈곤의 종식임은 여전히 분명하나 Post-2015 체제에서는 개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 즉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에 관련 이슈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인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개발재원 확대 조성 논의가 그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 강화를 추구한다.

개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제의 부상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하며, 전 세계는 개발재원 확대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다. 흔히 ODA와 개발재원이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발재원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절반 수준에서 최근에는 20%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선진국 GNI 대비 ODA 비중 0.7%라는 수량적 목표가 거듭 확인되고, ODA의 출처가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예산이라는 점에서 개발재원으로서 ODA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

로 인해 ODA 규모 확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 이외의 다양한 자금 조달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 ODA를 비롯하여 여타 공적 재원의 흐름을 포괄하는 ‘총공적개발지원(TO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Post-2015 체제하에서 개발재원 확대 논의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TOSD의 관점에서 ODA 이외의 공적개발재원 확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자 한다. 또한 Post-2015 체제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제기될 쟁점을 전망한다. 개발과 관련이 깊은 다양한 부문에서 재원 조성 논의가 진행 중인 바, 글로벌 지속가능개발 금융체제는 매우 복잡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이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재원 조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 연구 방법 및 구성

최근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 도입을 앞두고 개발협력과 관계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 및 전략 등 다양한데 개발 프레임워크 형성에 있어 영향

력을 고려할 때 UN, OECD, 다자개발은행, DAC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UN과 산하 작업반의 결과물 및 UN 사무총장의 고위급 패널 보고서를 분석하여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전망한다.

글로벌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이행수단인 개발재원을 본 연구의 주제로 삼으면서, 특히 개발자원 조성 측면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ODA 확대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ODA뿐만 아니라 개발자원 전반에 있어 규모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financing for development)을 조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성공적인 방식은 표준 모델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DAC의 기술적인 자료들은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이다. 2012년 DAC 고위급 회의 이후부터 개발자원 논의가 심화되었는데, 본 연구는 2012년 12월 이후 DAC 회의 문서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EDCF 등 정책결정자인 정부와 유관기관 담당관의 입장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개발자원 연구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2013년에 외교부 수탁과제로 수행한 연구가 대표적이다.<sup>1)</sup> 연구진은 개발재원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DAC 회원국의 개발자원 현황과 우리나라

---

1) 손혁상(2013).

비교를 통해 개발재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DAC의 ODA 정의 재정립과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 수단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두었는데 유엔 기후변화 협상 참여와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유엔기후변화협약 문서 분석에 기초한다. 현재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재원 조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개발재원과 기후재원 조성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진전에 기여하고, 국내적인 이행방안을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의 두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최근 진행 중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개발재원 논의 전반을 다루는 도입 부분으로 먼저 Post-2015 개발 논의의 배경과 핵심 비전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환경 보호와 보전의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어떻게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의 목표로 전환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원규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망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발재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개발재원의 의미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에 대해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개발재원의 유형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개발재원 측정의 투명성 관점에서 최근 DAC에서 진행 중인 ODA 개념의 현대화,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ODA의 ‘양허성’

에 대한 정량적 기준에 관한 논의와 지원수단이 아닌 공여국의 실제 재원 제공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증여등가액 개념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민간재원의 중요성과 민간자금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한다. ODA 자금과 개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공적자금이 민간재원 동원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자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을 평가하고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유형별 개발재원 조성 현황을 DAC 회원국과 비교·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공 재원에 대한 재인식을 반영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자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자원 규모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시한을 1년 남겨둔 지금,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이후부터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수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사회개발에 중점을 둔 MDG를 넘어 경제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 안보의 네 가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Post-2015 개발의제는 협력 분야와 대상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MDG는 빈곤 문제와 저개발국의 교육 및 보건 이슈를 국제적인 의제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분쟁이나 재난을 겪는 취약국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빈곤 문제가 협소하게 다루어져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및 평화 등 범분야 이슈와 정책적 일관성을 높이는데도 일정 정도 한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 목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원칙하에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 세대의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비전으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최근 포용적 경제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인류 공동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논의가 환경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나아가 오늘날에는 사회와 경제 등 인간 개발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먼저 Post-2015 의제 설정과 관련된 주요 회의 동향을 정리한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Post-2015 체제가 채택할 행동목표인 ‘지속가능발

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입에 관한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재원 수요를 추정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향후 개발재원 조성 규모를 전망한다.

## 1. Post-2015 의제 설정

2010년 유엔 총회 결의안을 계기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과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비전, 원칙, 파트너십 방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 2-1. Post-2015 의제 설정 관련 주요 동향

연도	주요 사항	주요 결과물
2010. 9	제65차 UN 총회 - UN 사무총장에게 Post-2015 개발의제 구상 촉구	결의문(A/RES/65/1) 채택 •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DGs”, para, 81
2012. 1	UN System Task Team 운영 개시 - 목적: 새로운 의제 방향 설정 및 주제별 논의 개시	주요 보고서 •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2012, 5)”: 기본 원칙, 프레임워크 •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2013, 3)”: MDG 8을 보완하는 이행 파트너십 •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2013, 7)”: 지표 및 모니터 링 요건

표 2-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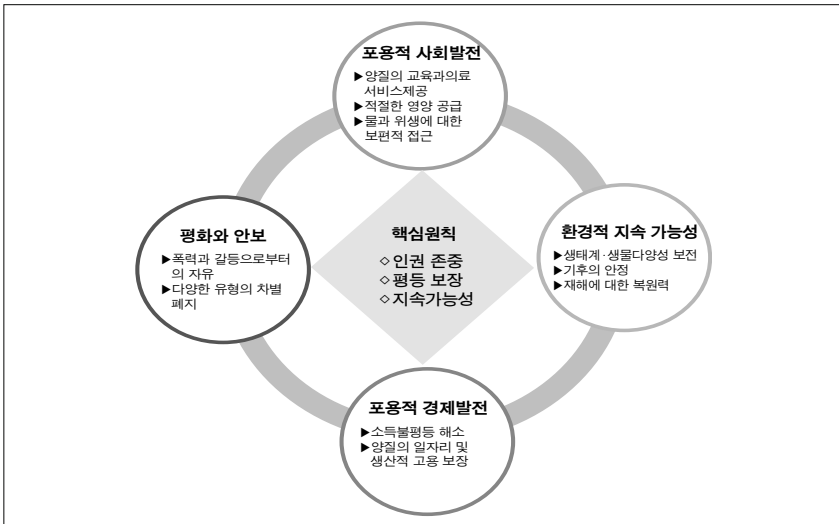
연도	주요 사항	주요 결과물
2012. 6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문서 “The Future We Want”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수립 합의</li> </ul> </li> <li>• OWG 구성(2013. 1), 종합보고서 제출 예정(2014. 9)</li> </ul>
2012. 7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HLP) 발족 - 구성: Cameron 영국 총리,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 27명의 세계 저명인사 포함(우리나라,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 참여)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c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 발표(2013. 5)
2012. 8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 구성 - 구성: Jeffrey Sachs 교수가 학계, 시민단체, 민간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	주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3. 6)</li> <li>• Indicators for SDGs(2014. 3)</li> </ul>

자료: 저자 작성.

60여 개의 UN 기구 및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2012년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통해 향후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의 시작점을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권과 평등성에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다(그림 2-1 참고). 또한 UN 작업반은 2015년 이후 개발의 제가 다루어야 할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인권 존중, 평등 보장, 지속가능성의 핵심원칙하에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는 포용적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용적 경제발전, 평화 및 안보의 네 가지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고위급 패널의<sup>2)</sup>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2000년 이후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새로운 개발의제는 이와 같이 변화

그림 2-1.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자료: UN System Task Team(2012), p. 24 저자 재구성.

한 국제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3)</sup> 2013년 UN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고위급 패널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빈곤해소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제협력 추구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위급 패널의 보고서는 빈곤의 해소 없이는 모두에게 평등한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없고, 경제적 풍요 없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며, 환경의 보전 없이는 환경 변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빈곤의 해소가 불가함을 언급하였다.<sup>4)</sup> 따라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빈곤 해소와 경제적 풍요,

2) Cameron 영국 총리,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세계 저명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3) UN(2012b), p. 1.

4) *Ibid.*, p. 5.

## 글상자 2-1.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원칙

새로운 개발목표는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절대빈곤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바탕으로 하되 인구, 도시, 환경 문제, 과학기술 발전 등의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목표는 다음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1. 전 세계 인구를 포괄할 것.
2.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삼을 것.
3. 고용창출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
4. 평화 구축 및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추구할 것.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

자료: UN(2013), pp. 1~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세 축을 포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개발의제의 수립을 강조하였다(글상자 2-1 참조).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MDG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수의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추구하고, 사회적 측면에 다소 집중되었던 MDG를 보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반영하여 경제·사회·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sup>5)</sup>

##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 빈곤의 종식이다. 2000년에 MDG는 빈곤과 기아 해소를 제1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목표들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MDG 달성시한

5) OECD(2013a), p. 20.

을 1년 남겨둔 지금 빈곤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간 및 국가 내 빈부격차의 심화는 개발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된다. 개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며, 지속가능발전이 Post-2015의 비전으로 제시되는 배경이다.

지속가능발전은 198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기후변화는 그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개발 논의에서 핵심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 경로가 구조적으로 전환(transformative)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시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핵심이다. 또한 저탄소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이와 관련, 유엔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sup>6)</sup> 발표한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 제시된 바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

6)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를 배경으로, 1983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sup>7)</sup> 이 보고서에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합리적 투자, 인간 지향적 기술개발, 사회구조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동태적인 변화과정”이라 해석하였다.<sup>8)</sup>

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논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10),<sup>9)</sup>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계속되었다.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진 UN 환경개발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의제 21(Agenda 21)’을 도출하여 리우 선언의 실천을 도모하였다.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며, 사회와 경제 분야의 행동 추구,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 및 관리, 여성 등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이행수단 등의 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Rio+10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보호가 지속가능발전의 세 요소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은 구체적인 행동과 수단,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리

---

7) 정지원, 강성진(2012), p. 17.

8) 정지원, 박수경(2012), p. 5.

9) 공식 회의명은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우 선언의 실현을 재차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축의 통합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sup>10)</sup>

2012년 개최된 Rio+20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사회와 경제,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도입과 그 원칙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지구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된 이 회의는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강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The Future We Want’라고 명명된 결과문서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원칙과 이행방안 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였다. Rio+20 결과문서는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여기에서 언급된 지속가능발전 원칙과 추진방안 등은 현재까지 SDG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및 합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 결과문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앞서 채택된 의제 21과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적 균형을 고려할 것과, Post-2015 개발의제와 방향성을 같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sup>11)</sup>

밀레니엄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단순히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빈곤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빈곤의 영구적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의 모든 측면과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발전과 평등한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의 보전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sup>12)</sup> 즉, 오늘

---

10) UN(2002), paragraph. 2.

11) UN(2012a), paragraphs. 246-247.

날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사회, 자연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개발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sup>13)</sup>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은 등장의 초기,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의 보전에 국한되었던 개념에서 점차 경제, 사회, 환경 등 개발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과 그 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Rio+20 결과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검토하고 이를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4)</sup>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OWG)을 개설하였다. 2013년 1월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균형적 참여를 고려하여 총 30개국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OWG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OWG는 크게 의견 수렴과 현황 파악으로 구성된 전반기 활동과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논의를 심화하는 후반기의 2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3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2월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전반기 협의에서는 OWG의 운영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화, 이행방안과 세부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년 2월 공동의장은 전반기의 협의에서 수집한 논의내용과 하반기 토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19개 주

---

12) *Ibid.*, paragraphs. 1-3.

13) UN(2012b), paragraph. 21.

14) UN(2012a), paragraph. 248.

제를 취합하여 공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 7월까지 다섯 차례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7월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9월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 수립에 관한 최종제안서(Proposal of the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68차 UN 총회에 제출하였다. 세부 목표 리스트를 축약하고, 목표별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개발 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표 2-2.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안)

	목표	환경 연관성
1	전 세계에서 빈곤을 완전히 해소한다.	간접
2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공급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한다.	간접
3	전 세계인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간접
4	전 세계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평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파악 어려움
5	전 세계 지역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 권위를 신장한다.	파악 어려움
6	전 세계인에게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7	전 세계인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직간접
8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적절한 일자리를 추구한다.	간접
9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산업화를 추구하고 혁신을 추구한다.	간접
10	국가간 및 국가 내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간접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인간정착지를 구축한다.	직접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을 추구한다.	직접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여 활동을 추구한다.	직접
14	해양자원과 해양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추구한다.	직접
15	지구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추구하고 사막화, 토양손실, 생태다양성 손실을 방지한다.	직접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와 전 세계인을 위한 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파악 어려움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수단을 강화한다.	간접

자료: UN(2014)을 토대로 저자 작성.

환경과 직결된 목표가 단 한 개(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에 불과했던 밀레니엄개발목표에 비해 OWG가 제시한 새로운 목표는 환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목표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새로운 개발의제가 2000년 이후 도전과제로 등장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환경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환경의 보전 및 보호를 간접적 목표로 추구함으로써 개발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다루게 된 것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환경과 경제·사회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자원 규모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하에서 새로운 개발목표의 범위가 기존 MDG에 비해 확대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자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UN 작업반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 수요 추정과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별도의 그룹을<sup>15)</sup> 조직하였다. 이 작업그룹은 개발 관련 자원수요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16)</sup> 자원 규모는 추정 시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상호 비교 또는 수치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는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의의가 있다.

---

15) Working Group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6)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global investment requirement estimates.*

##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재원수요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모형은 계량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통합평가모형, 성장모형, 공학모형 등이다. 계량분석은 주로 인프라 투자 수요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특정 분야의 투자나 특정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설비율(equipment rate)을 종속변수로 두고 거시경제 변수 등 상관관계가 있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계량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한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투자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횡단면, 시계열, 패널 등 시간과 변수 구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의 구조가 달라지며, 모형의 특징에 따라 투자수요를 모형 자체에서 구하거나 별도로 계산하여 추정한다.

연산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일반적으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특히 CGE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변화를 가정하고 분석하며, 다부문 모형(multi-sectoral model)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CGE 분석의 가장 큰 한계는 이른바 ‘no-regret option’을 분석에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감축하는 행위 그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발생하는 효과는 CGE 분석을 통해 추정하기 어렵다.

표 2-3. 계량모형을 활용한 이용 투자수요 추정 연구

저 자	연 도	주 제
Fay and Yepes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국가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소득과 인프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실증분석</li> <li>- 2005~10년 동안 연간 개도국 GDP의 5.5%(4,65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li> </ul>

자료: Fay and Yepes(2003).

표 2-4.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수요 추정 연구

저 자	연 도	주 제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1인당 소득이 1,200달러 이하인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 기초 제공에 필요한 비용 추정</li> <li>- 보건에 대한 추가투자수요는 2007년까지는 매년 1인당 34달러, 2015년까지는 매년 38달러</li> </ul>
Stenberg <i>et al.</i> (WHO)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15년까지 매년 아동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도국 75 개국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수요를 추정</li> <li>- 투자수요 증가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된 추가적인 투자수요는 524만 달러</li> <li>- 2006년에는 추가적으로 22만 달러(1인당 0.47달러)가, 2015년에는 78만 달러(1인당 1.46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li> </ul>
WHO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보건 시스템, 보건 정책수단의 완전성, 영향력 예측 등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수요 투자 추정</li> <li>-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1인당 연간 보건 수요는 25달러이며, 2,300만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가정</li> <li>- 말라리아 사망률 감소 외, 에이즈나 결핵에 대한 보건 서비스 확대 수요 추정</li> </ul>
Fideschik <i>et al.</i> (IPCC)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가지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전 세계 투자수요 추산</li> <li>- 대기 중 CO<sub>2</sub>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시키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2011~20년까지 연간 1,360억~5,100억 달러, 2021~30년까지 연간 1,490억~7,1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 예측</li> </ul>
Roehr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및 현대화된 조리용 연료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투자수요에 대해 추정</li> <li>- 최저소득인구 16억 명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550억~1,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li> <li>- 농어촌지역의 송전망 연계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li> <li>-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필요</li> </ul>

자료: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 pp. 8~9, pp. 13~14;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2001); Stenberg *et al.*(2007); Fideschik *et al.*(2011); WHO(2010); Riahi *et al.*(2012), 재인용: Roehrl(2012), pp. 31~36.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은 일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관련된 분석에서 많이 활용된다. 기후변화의 효과는 경제 및 생태계 시스템을 포괄하는 통합모형을 구축하여 추정된다. IAM 방식 사용 시 부

표 2-5. 성장모형을 활용한 투자수요 추정 연구

저 자	연 도	주 제
Devarajan <i>et al.</i>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를 두 가지로 나누어 추정: 1)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성장 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재원 추정, 2) 보건, 교육 및 환경 등 특정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계산</li> <li>- 매년 400억~70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추정</li> </ul>
Atisophon <i>et al.</i> (OECD)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로드-도마 성장모형(Harrod-Domar growth model)에 기초하여 성장과 개발재원을 연계함.</li> <li>- 개도국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99 개 개도국의 MDGs 달성을 위해 1,231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함.</li> <li>- 양성평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수요 추정은 교육 분야에서 다름.</li> </ul>

자료: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 pp. 6~10; Devarajan *et al.*(2002); Atisophon *et al.*(2011).

문별 투자수요는 모형 내부의 최적화모형의 결과로 도출되거나 사후적으로 배분하기도 한다.

성장모형은 주로 MDG의 비용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수요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GDP 증가 및 그와 관계있는 변수 간 연계에 대한 가정과 빈곤층이 성장의 편익을 어떻게 공유하는가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하여 비용 및 투자수요 추정치를 도출한다. 한편 공학모형은 다양한 기술 및 비용변수를 포함한 개별 분야에 관한 상세한 특징에 기초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공학모형은 부분균형이나 일반균형모형과 연계하여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수요를 추정하기도 한다.

구조모형과 명시적인 연계가 없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설정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의 비용을 측정하여 투자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IPCC(2007)는 다양한 부문의 활동에 기후요소 (climate markup)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비용을 추정할 바 있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목표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전략적 우선순위 활동을 선택할

표 2-6. 부문별 투자수요 추정 연구

저 자	연 도	주 제
UN Millennium Project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섯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M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 및 수단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전 세계가 MDGs 달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추정함.</li> <li>- 역량 배양, 지역 협력 및 인프라와 리우협약 수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추정</li> </ul>
Grown <i>et al.</i>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Gs 중 양성평등과 관련 있는 비용을 추정하며, UN Millennium Project(2005)에서 개발된 개입 수단을 기초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비용 계산</li> <li>- 양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 및 양성평등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의 일부를 더하여 투자수요를 추정</li> <li>- 5개의 저소득국에서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해 1인당 연간 37~57달러가 필요하며, MDGs 목표 달성 비용의 35~52%를 차지</li> </ul>

자료: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 pp. 6~7, pp. 9~10; UN Millenium Project(2005); Grown *et al.*(2008).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문별 활동이 얼마나 구체적인 지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너지 효과나 상충효과(trade-offs)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OECD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운송, 발전, 수자원, 통신 등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수요를 약 71조 달러로 추정했으며,<sup>17)</sup> IEA(2012)는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50년까지 36조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투자 규모를 추정된 연구로는 UNDESA(2011)와 UNEP(2011)이 있다. UNDESA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연간 1조 1,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17) Stevens *et al.*(2006), p. 29.

UNEP은 녹색경제보고서에서 같은 기간 연간 전 세계 GDP의 2%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자원수요에 관한 최근 연구들 대부분은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감안할 때 발생하는 투자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기후변화 적응 비용 추정이 대표적이다. 또한 에너지 부문의 경우 개도국의 핵심 과제인 에너지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 1) 에너지 부문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에너지기술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부문의 CO<sub>2</sub>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46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sup>18)</sup> 한편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대략 1조 달러로 추정하였다.<sup>19)</sup>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sup>20)</sup> 대기 중의 CO<sub>2</sub> 농도를 450ppm으로 유지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계 누적 투자수요 규모는 2011~20년까지 연간 1,360억~5,100억 달러가량이며, 2021~30년까지 1,490억~7,18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18) IEA(2010), P.8.

19) IEA(2012), p. 538.

20) Fideschik *et al.*(2011), pp. 849~850.

## 2)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원 수요는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축은 에너지 효율성, 저탄소 에너지 공급,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포집(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carbon sink) 관리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UNFCCC(2007)와 McKinsey & Company(2009)는 바이오연료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관련된 투자수요를 추정하였으며, IEA (2009)는 에너지 부문 CO<sub>2</sub>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투자수요를 추정하였다.

UNFCCC(2007)는 2030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다. McKinsey(2009)는 tCO<sub>2</sub>e당 90달러 이하 비

표 2-7. 온실가스 감축 비용 추정치

(단위: 십억 달러/년)

	전 세계			개발도상국		
	UNFCCC	McKinsey	IEA	UNFCCC	McKinsey	IEA
화석연료 공급	-59	27	-128	-32		
전기 공급	148	222	142	73		72
바이오연료			38			9
건물	51	297	206	14		87
산업	36	142	88	19		57
교통	88	450	334	36		152
농업	35	0		13		
산림	21	65		21		
기타	1	12		1		
<b>총</b>	<b>380</b>	<b>1,215</b>	<b>808</b>	<b>177</b>	<b>695</b>	<b>377</b>

주: i) UNFCCC는 2030년, McKinsey는 2026~30년까지의 연평균, IEA는 2012~30년

ii) UNFCCC 추정 투자수요는 2005년 미국달러, IEA 추정 투자수요는 2008년 미국달러 기준이며, McKinsey 추정 투자수요는 €1=US\$1.50 기준으로 환산한 값

자료: UNFCCC(2007); IEA(2009); McKinsey & Company(2009); Olbrishch *et al.*(2011), 재인용: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 p. 15.

용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비용곡선을 개발, 2030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2026~30년까지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IEA(2009) 보고서는 450ppm 시나리오를 전제로 2030년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2021~30년까지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감축 활동을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는 연간 3,800억~1조 2,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의 감축활동을 위해서는 1,770억~6,950억 달러가량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NFCCC(2007)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490억~1,710억 달러, 선진국은 2,250억~1,050억 달러, 개도국은 270억~6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World Bank(2010)는 201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대략 2도 상승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700억~1,000억 달러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 3) 산림 부문

산림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UNFF가 201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700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UNFCCC(2007)는 총괄적인 산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434억 달러로 추정했다. REDD+<sup>21)</sup> 지원을 위한 비공식 작업반(IWG-I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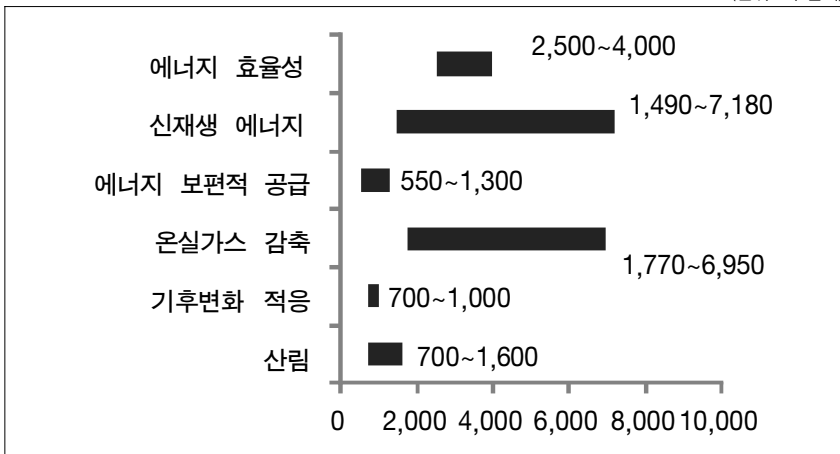
---

21)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도국이 산림지역을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의 탄소배출량 조정 능력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부가하고자 하려는 시도이다. REDD에서 파생된 REDD+는 단순히 산림파괴 및

Informal Working Group on Interim Finance for REDD+)은<sup>22)</sup>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성과기반의 인센티브 제공,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0억~50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면, 2015년까지 전 세계 산림과괴울 25%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된 바 있다.

그림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투자수요 범위

(단위: 억 달러)



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은 저소득층 대상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비용은 개도국에 적용되며, 나머지는 전 세계의 투자수요임. 부록 1 참고.

자료: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 p. 5를 저자 재구성

산림 황폐화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산림보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의 탄소보존 능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완화 촉진 이니셔티브이다(UN-REDD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un-redd.org/AboutREDD/tabid/102614/Default.aspx> 참고,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 22) 본 작업반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Report of the Informal Working Group on Interim Finance for REDD+(IWG-IFR)’는 UNFCCC하 국제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으며, 2009년 4월 1일 런던에서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열대림의 중요성 및 열대림에 대한 재원지원 확대가 시급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IWG-IFR을 발족하였다(IWG-IFR(2009) 참고).

## 제3장 개발자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논의 경과
2. 개발자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자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국제사회는 빈곤해소는 물론 환경, 보건, 여성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ODA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재정압박과 냉전 종식 이후 원조 동기의 약화, 민간자금의 유입증가로 개도국의 개발재원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와 더불어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UN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래 개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96년 5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다. 이어 개도국 빈곤 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UN 밀레니엄 선언(55차 총회, 2000년 9월)이 채택되었다. 이때 글로벌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8대 목표와 21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제시되었다. MDG가 수립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성과 중심의 ODA 정책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제3차 최빈국회의, 2002년 3월 개발재원 정상회의, 2002년 9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등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해소 달성을 강조하고, 국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sup>23)</sup>

UN의 경우 1997년 제52차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

---

23) 권 울 외(2006), pp. 36~37 참고.

부간 파트너십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01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고위급 패널을 구성하고<sup>24)</sup>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ODA 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 기준 DAC 회원국의 총 ODA 규모는 540억 달러로 대략 2배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 보고서는 이후 ODA 배증계획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5)</sup>

2002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 정상회의에서는 개발을 위한 재원 확대방안으로 국내 재원의 조성, FDI 등 국제 민간재원의 유입확대, 국제무역의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가 도출되었다. 여기서 선진국은 GNI 대비 0.7% 수준으로 ODA를 확대하기로 한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ODA 확대 목표 달성방안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개도국의 비판이 있었으며, MDG 성과 중간점검을 위해 2005년 개최된 제60차 UN 총회에서 선진국의 ODA 확대 노력이 다시 촉구되었다.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정상회의 이후 개발재원 후속회의(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되어 40여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 대표가 한자리

---

24) 고위급 패널의 의장으로는 전 멕시코 대통령 세디요(Zedillo)가 임명됐다.

25) 그 세부 소요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2015년을 목표로 한 빈곤완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500억 달러가 필요하고, 둘째 인도적 원조를 위해 현재수준에서 30억~4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최소한 연간 80억~90억 달러가 소요되며, 셋째 국제 공공재 확충을 위해 현재 수준의 4배인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 모였다.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성과를 검토하고, 국내 재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한 개도국 조세체제 개혁과 자본 도피를 규제하는 국제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WTO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타결과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 확대를 강조하였다.<sup>26)</sup> 특히 AfT는 중장기 개발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무역확대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한편 개도국들이 외부로부터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경제 및 금융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진국들은 그러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4th High-Level Forum)에서는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기존 선진국 관점의 원조효과성 제고에서 개발효과성 확대로 전환하는데 합의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5년에 채택된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공여국 주도의 국제규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개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개발재원으로서 ODA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재원의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sup>27)</sup>

앞 장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사회개발은

---

26) 김태균(2013), pp. 185~186.

27) 임소진(2012), p. 4.

물론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인권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안보까지 대상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즉 수원국의 국내 재원 조성을 장려하고,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개발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201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Post-2015 고위급 패널회의에서는 개발재원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sup>28)</sup> 이 회의에서 도출된 발리 코뮌iqué는 Post-2015 개발의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 개선 공약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재원 조달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내 재원 조달, 민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ODA는 물론 남남협력, 삼각협력, 부채 스와프, 보증 등 혁신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원국 차원에서는 조세회피 관련 규제정비와 불법자금 흐름 등 국내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해결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공여국의 역할과 의무로는 지식공유와 역량강화, 기술이전이 핵심 과제로 명시되었다.

##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국제사회가 MDG를 천명하면서 개도국을 위한 다양한 개발재원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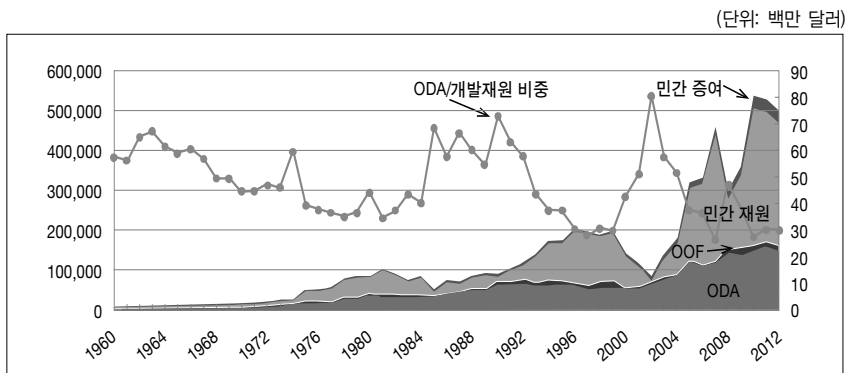
---

28) 이승주(2013), p. 71.

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 2002년 몬테레이 합의, 2008년 도하선언 등에서는 개발재원의 확대와 다양한 방식의 혁신적인 자원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OECD에서는 개발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private fund)으로 구분한다. [그림 3-1]은 개도국으로 유입된 개발재원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개발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자금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난다.

ODA는 지난 40여 년간 개도국의 발전을 꾸준히 지원해온 핵심 개발재원이었으나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송금(remittance) 등 민간자금의 개도국 유입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개도국 유입 자원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960~69년간 해외송금을 제외하고 외부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되는 개발자원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8%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00년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약 47%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30%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비해 민간

그림 3-1.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주: 순지출, 경상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최종 검색일: 2014.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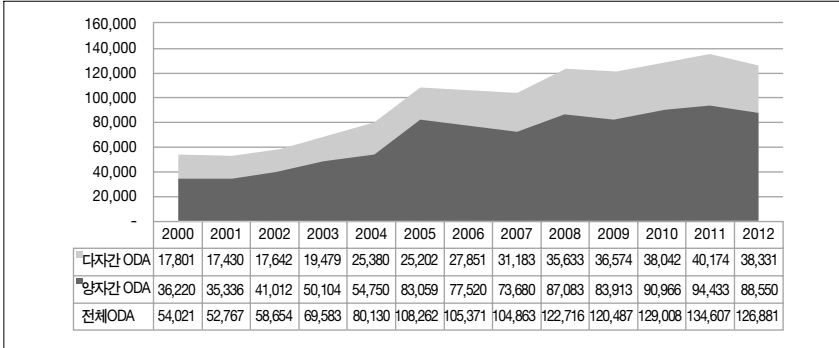
재원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충격에 따라 그 변동성이 커서 수원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민간재원의 규모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흐름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OOF의 비중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ODA 규모는 MDG 목표 수립과 함께 증가하였으나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기침체 및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ODA 규모 확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림 3-2]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 이후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2011년에는 1,346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3.6% 감소하였다. 국별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ODA/GNI 비중도 원조규모가 감소하면서 2012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 0.29%를 기록하여 전년도(0.31%)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ODA 규모의 감소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영국(-0.5%), 프랑스(-1.4%), 독일(-2.0%) 등 ODA 지원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전통 공여국의 경우에도 ODA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ODA 증감액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큰 감소율을 보인 국가는 스페인(-47.3%), 이탈리아(-32.3%), 그리스(-16.1%)로 남유럽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3-3 참고).

그림 3-2. DAC 회원국의 OD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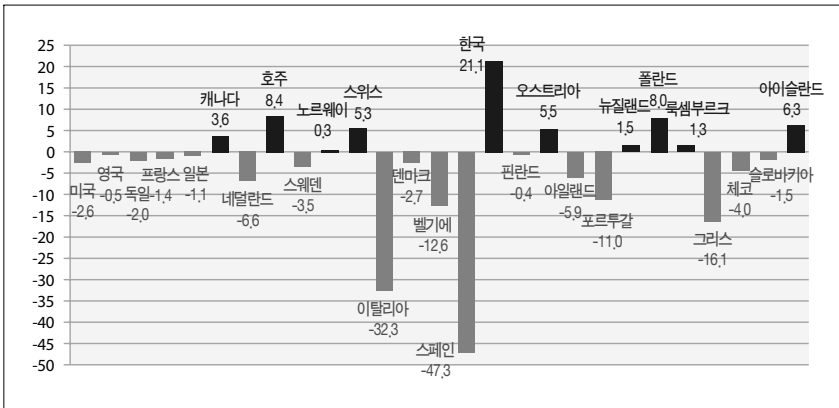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 CRS 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2. 20).

그림 3-3. DAC 회원국의 실질 ODA 증가율

(단위: %)



주: 2011~12년 기준.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1. DAC Members' Net ODA in 2012(<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2. 20).

2000년대 이후 개도국들의 개발수요가 크게 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갖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민간재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적

극 추진함에 따라 주요 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공여국들이 정부예산 대신 낮은 금리로 국제자본시장에서 ODA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DAC 회원국간 ODA 양허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sup>29)</sup>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ODA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이 사실이며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ODA를 비롯한 공공재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Post-2015 의제가 MDG를 포함, 포괄적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개발재원의 범주 역시 과거보다 확대 발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DAC는 개발재원 흐름의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ODA를 포함한 개발재원 측정방식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DAC는 2012년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 IMF, World Bank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Post-2015 체제에 대비해 공적 개발재원 측정과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ODA 개념 현대화와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DAC는 ODA 통계와 관련하여 현대화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측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sup>30)</sup>

29)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기획실(2013), pp. 2~3 참고..

30) ODA를 비롯한 개발재원 측정에 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나 논의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한다(OECD DAC(2014e)).

### 글상자 3-1. 2012년 DAC 고위급회의의 주요 내용

DAC은 201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현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위기요소들을 점검하고, 국제사회 공조체제 속에서 DAC의 역할과 향후 전략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이 회의에는 DAC 회원국 외에도 IMF, 세계은행, UNDP, 기타 UN 대표부, ADB, AsDB, IAD, 글로벌파트너십(GPEDC) 의장 등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기구가 참석하였으며,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위급 대표가 동 회의의 옵서버로 초청되어 전통적인 공여국외에도 신흥공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주요 개도국들도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원조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를 통해 DAC 회원국들은 Post-2015 개발목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개발자원, DAC 회원국의 확대에 대한 회원국 공동의 노력에 관한 공식 성명(communique)을 발표하였다. 개발자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2년 몬테레이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개발성과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여타 개발재원에 대한 보완적이면서 촉매제적(catalytic) 성격으로서의 ODA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개발재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보고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DAC의 역할로는 개발자원 측정의 현대화와 모니터링에 기여하고 Post-2015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개발자원 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개발자원 측정수단으로서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개시하는 한편, 양허적 성격을 포함한 ODA 현대화(modernization) 논의를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자료: OECD(2012a).

##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공적개발원조(ODA)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정의는 1961년 DAC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원 흐름을 측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개념화되었다. 그 후로 DAC 회원국간 개도국에 대한 지원조건 개선과 양적 규모의 확대,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활성화되었으며,<sup>31)</sup> 1969년 DAC에서 처음 ODA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sup>32)</sup> ODA

31) 자세한 내용은 Hynes and Scott(2013), pp. 3~4 참고..

32) OECD(2013b)는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에서 ODA 정의 및 범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여국의 공적기관이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재무적 조건을 나타내는 증여율(grant element)이 시장에서 조달되는 금리보다 좋은 양허적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증여율이 25% 이상인 재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ODA를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한정할 때에는 공적자금의 경우 국별 지원금액의 측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ODA 정의에 대해 DAC에서는 현재까지 그 해석을 열어두고,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해왔으나 큰 틀에서의 정의는 변함없이 유지해왔다.<sup>33)</sup> 그러나 현재 변화하는 개발협력 체제를 반영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ODA의 촉매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ODA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DAC 회원국들은 ODA의 정의를 2015년까지는 변경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개념들을 재검토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MDG 달성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성과를 분석하기 전에 달성 수단인 ODA의 개념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34)</sup>

ODA 개념 현대화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수원국으

33) ODA 정의의 진화(evolution)와 관련된 내용은 OECD(2011), p. 6 참고.

34) 그러나 DAC 회원국들은 ODA 개념 현대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OECD(2012b), p. 7.

로 자금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사업(예: 공여국 행정비용, 초청 연수, 난민지원비용의 ODA 처리 문제), 둘째, 현금흐름 측정 방식(보증과 같이 즉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들어간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음), 셋째, 개발금융기관에 의한 기여 반영 방식 등이다. 이와 관련, 2014년 1월 23~24일 양일간 개최된 제2차 개발재원전문가자문그룹(ERG) 회의에서는 ODA의 측정과 관련한 세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sup>35)</sup> 첫째, ‘집중된 ODA(Focused ODA)’로 개념을 한정하여 국민인식 제고 사업 등 공여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을 제외하고, 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 지출내역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새로운 ODA(New ODA)’로 무상원조가 아닌 경우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만을 계상하도록 하며, 공여국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ODA 적격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공여국내에서 자금 흐름이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개도국 장학생 지원 금액은 ‘유령원조(phantom aid)’로 불리며 수원국의 비판을 받아왔다. 셋째, ‘업데이트된 ODA(Updated

표 3-1. 시나리오별 ODA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ODA	시나리오		
		I	II	III
증여	13,549.1	6,672.3	10,839.2	13,549.1
	행정비용, 연수, 개발인식, 난민지원 비용 포함	행정비용만 포함	대부분 포함하나 적격 기준 강화	모두 포함
차관	2,430.5	311.0	10,546.0	13,797.2
	양허성 차관의 순가치	정부의 이자보전금액	차관의 증여등가액	차관의 액면가치

주: 2012년 ODA 통계 기준.

자료: OECD DAC(2014c), p. 8.

35) OECD DAC(2014c), pp. 3~6.

ODA) 방식은 현재 ODA의 현금주의(cash basis) 회계를 유지하되 항목 수를 조정하고, 양허성 평가 측정방식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제1차로 2012년 ODA 규모를 재계산하면 [표 3-1]과 같다.

### 글상자 3-2. DAC의 ODA 현대화 논의 동향

외부 개발재원의 측정 및 모니터링 이슈는 개발재원에 관한 DAC의 주요 과제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DAC 정례회의에서 개발재원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며, 그 중 일부 이슈들은 DAC 통계작업반(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WP-STAT)으로 위임되어 논의되고 있다. WP-STAT는 기술적인 분석 및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개발재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그룹(ERG: Expert Reference Group)'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분석 결과를 수렴하여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싱크탱크, 시민사회, 학계 등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ERG는 2012년 DAC 고위급회의의 위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제로 DAC의 의사결정과 분석 작업을 돕기 위해 2013년 9월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4년 10월경 마지막 회의를 통해 ODA 측정과 개발재원의 유형 및 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WP-STAT와 ERG의 논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DAC Senior Level Meeting에서 공유하여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방향, 기존 위임사항에 대한 수정내용, 제안서 등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 12월 DAC 고위급회의에서 최종 제안서를 검토 및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저자 정리.

##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 1) 주요 쟁점

ODA 차관의 '양허적 성격'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ODA 차관 보고에 대해 다음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둘째, 전반적인 ODA 수준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피한다. 셋째, 다자기구에서 정의하는 양허성 측정방식과 대체로 일관되어야 한다. 넷째, ODA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ODA에 적합한 차관 해석을 명확히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ODA 차관이 상업적 논리를 따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차관 제공으로 인한 환급된

이자 수익이 개발 목적으로서 재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DAC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양허적 성격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저렴한 조건으로서 명확한 양적 정의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의 양허 수준은 총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은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되어 왔다. DAC에서는 10%의 할인율을 기준으로 증여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차관을 ODA로 계상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타공적자금(OOF)으로 구분한다.<sup>36)</sup>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10%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DAC 고위급회의는 양허성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개최된 DAC Senior Level Meeting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sup>37)</sup> ① 다자기구 방식인 현 시장상황에 근접한 고정할인율을 사용하는 방안과 ② 위험 수준별로 차별화된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양허성을 계산하는 할인율을 수정하는 것과 더불어 차관의 ODA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방식대로 증여율(grant element)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개념을 새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 WP-STAT와 ERG는 투자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의 사용과 증여등가액을 도입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DAC 회원국간에는 이견이 있었다.

DAC의 ODA 통계 Reporting Directive는 양허적 성격의 정량적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DAC는 현재 Reporting Directive를

---

36) OECD DAC(1969).

37) OECD DAC(2014e), p. 6.

2015년까지 업데이트할 계획인데, 이는 글로벌 ODA 통계 수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DAC가 공여국의 기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ODA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ODA 측정 방식이 실질적인 개도국 지원자금 유입량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과 함께 대두된 개발재원의 ‘양허적 성격’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양허성 수준의 현실적인 측정방안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ODA 차관 규모를 측정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ODA 현대화 논의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ODA의 양허적 성격과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되는 할인율의 수준과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 여부, ② 지원 규모의 측정: 차관 총액 vs. 해당 차관의 증여등가액 계산 등이다.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시중의 일반 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지칭하는데, 차관의 양허 정도는 증여율 계산을 통해 결정된다. 증여율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다. 증여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차관은 ODA로 간주된다.

$$\text{증여율}(G.E.) = \frac{\text{차관액면가액} - \text{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 *}{\text{차관액면가액}} \times 100$$

\* 현재가치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10%

양허수준(concessional level)은 증여율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되나

차이점은 할인율을 10%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이 고려되며, 따라서 양허수준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공여국 입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으로 볼 수 있다.<sup>38)</sup>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되는 10%의 할인율이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감안할 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가 낮아지

표 3-2. 할인율에 따른 증여율 비교

상환일자	기간	원금	원리금 액면가액			원리금의 현재가치		원리금의 현재가치	
			원금	이자	총액	할인율 10%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	할인율 4%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
01/01/2001									
01/07/2001	0.5	1000.0		12.5	12.5	1.05	11.9	1.02	12.3
01/01/2002	1	1000.0		12.5	12.5	1.10	11.4	1.04	12.0
01/07/2002	1.5	1000.0		12.5	12.5	1.15	10.8	1.06	11.8
01/01/2003	2	1000.0		12.5	12.5	1.21	10.3	1.08	11.6
01/07/2003	2.5	1000.0	62.5	12.5	75.0	1.27	59.1	1.10	68.0
01/01/2004	3	937.5	62.5	11.7	74.2	1.33	55.8	1.12	66.0
01/07/2004	3.5	875.0	62.5	10.9	73.4	1.40	52.6	1.15	64.0
01/01/2005	4	812.5	62.5	10.2	72.7	1.46	49.6	1.17	62.1
01/07/2005	4.5	750.0	62.5	9.4	71.9	1.54	46.8	1.19	60.2
01/01/2006	5	687.5	62.5	8.6	71.1	1.61	44.1	1.22	58.4
01/07/2006	5.5	625.0	62.5	7.8	70.3	1.69	41.6	1.24	56.7
01/01/2007	6	562.5	62.5	7.0	69.5	1.77	39.2	1.27	55.0
01/07/2007	6.5	500.0	62.5	6.3	68.8	1.86	37.0	1.29	53.3
01/01/2008	7	437.5	62.5	5.5	68.0	1.95	34.9	1.32	51.7
01/07/2008	7.5	375.0	62.5	4.7	67.2	2.04	32.9	1.34	50.1
01/01/2009	8	312.5	62.5	3.9	66.4	2.14	31.0	1.37	48.5
01/07/2009	8.5	250.0	62.5	3.1	65.6	2.25	29.2	1.40	47.0
01/01/2010	9	187.5	62.5	2.3	64.8	2.36	27.5	1.42	45.6
01/07/2010	9.5	125.0	62.5	1.6	64.1	2.47	25.9	1.45	44.1
01/01/2011	10	62.5	62.5	0.8	63.3	2.59	24.4	1.48	42.8
원리금 현재가치 총액							sum=676.1		sum=921.0
증여율							32.4%		7.9%

주: 증여율=(차관 액면가액-원리금 현재가치 총액)/액면가액;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 2년.

자료: OECD DAC(2014f), Annex A 저자 재구성.

38) ODA의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 10%는 공여국 입장에서 재원을 국내 투자에서 원조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며, 이에 따라 증여율은 높아지게 된다(표 3-2 참고). 이와 관련, 2012년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차관의 양허성 판단기준이 다자기구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일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자기구의 양허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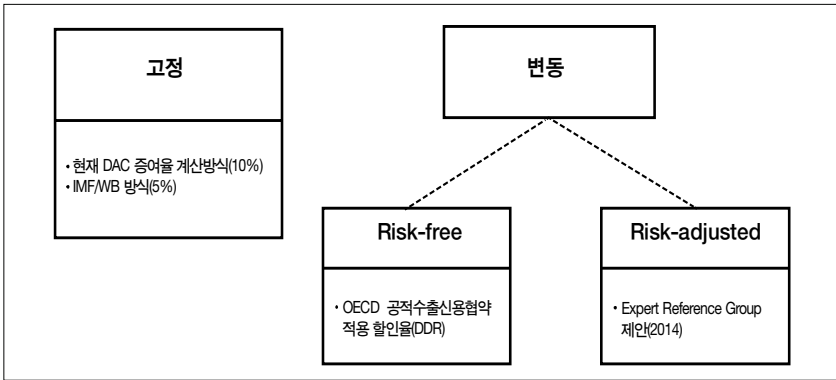
2012년 프랑스, 독일 등은 양허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sup>39)</sup> 이 제안서는 어떤 자금의 양허성 판단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일 경우 양허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여국의 투자 위험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할인율을 DDR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개별 국가의 위험요소가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부 공여국은 DDR 할인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증여율 25%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DDR 방식을 적용할 경우 상당 부분의 차관이 ODA로 계상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양허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공여국으로 하여금 위험이 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Roodman(2014)은 할인율을 10%에서 DDR로 변경할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ODA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일본은 이와 반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는 할인율 10%가 엄격한 기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요즘과 같이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공여국은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의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25%의 증여율은 쉽게 충족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 DAC 의장인 Manning(2013)은 이러한 차관은 이윤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허적 차

---

39) OECD(2012c), p. 3.

그림 3-4. 할인율 선택 방식



자료: 저자 작성.

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유럽개발은행(EIB)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 수준의 고정여부는 각각 다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정할인율(IMF/WB 방식, 5% 고정할인율)은 동일 조건으로 지원되는 차관이 공여국, 수원국, 환율 등 외부 요소에 상관 없이 동일한 증여율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차입 비용(cost of borrowing)이나 대출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 변동할인율을 따를 경우 수원국의 채무불이행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공여국이 실제 지원하게 되는 최종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단, 장래의 위험부담(리스크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무위험(risk-free) 변동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OECD DDR 방식), 수원국의 신용도를 반영한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공여국간 입장차가 존재해왔다.<sup>40)</sup> 한편 2014년 12월 OECD DAC 각

40) 위험조정 할인율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회원국에 인센티

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채택된 최종 커뮤니케이션에서는 IMF의 고정할인율(현 5%)을 기본요인(base factor)으로 하되,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의 조정요인(adjustment factor)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조정 증여등가액 방식을 채택하였다.<sup>41)</sup>

## 2) 국제기구 사례

IMF는 저소득국을 지원할 때 해당 국가의 부채 축적에 대한 우려를 반영, 양허성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 2013년 10월 IMF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 부채의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로서 고정할인율 5%를 새롭게 도입했다.<sup>42)</sup> 기존에 사용됐던 방식은 미 달러 CIRRs의 6개월 이동 평균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최근 할인율은 3%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증여율 하락에 따른 부채 과대 계상으로 인해) 저소득국의 borrowing space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sup>43)</sup>

한편 2009년 12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부채제한프레임워크(Debt Limit Framework)에 따르면 IMF는 수원국의 ①부채 취약성과 ② 거시경제 및 공공재정 관리, 이른바 수원국의 역량을 고려, 양허성 기준을 다르게 적용

---

브를 부여함으로써 IMF/World Bank의 채무지속가능성 통제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OECD DAC(2014d), p. 5).

41) 즉, 위험조정 할인율은 소득수준별로 상위중소득국 6%, 하위중소득국 7%,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 9%이다(OECD DAC(2014), p. 2).

42) 5%는 미 달러 CIRRs의 10년 평균값에 마진(1.15%)을 더한 값으로 2013년 기준 5.26%이며, IMF 관례상 5%로 간소화하여 사용한다(OECD DAC(2014h), p. 9).

43) IMF(2013a).

표 3-3. IMF의 저소득국 지원 프로그램의 양허성 조건

		부채 취약성	
		낮음	높음
수원국 역량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평균 양허성 조건 적용</li> <li>대상국가: 조지아,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세네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가치로 계산된 부채 총액 제한</li> </ul>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 건별 최소 양허성 조건 적용</li> <li>비양허성 부채 가능</li> <li>대상국가: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기니,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말라위, 니제르, 솔로몬제도, 탄자니아, 우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 건별 최소 양허성 조건 적용 (증여율 35% 이상)</li> <li>비양허성 부채 제한</li> <li>대상국가: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코모로, 아이티, 상투메 &amp; 프린시페</li> </ul>

주: 수원국 역량은 매년 평가. 국가 분류는 2013년 9월 30일 기준.

자료: IMF 홈페이지(<http://www.imf.org/external/np/pdr/conc/>) 최종 검색일: 2014. 11. 30); IMF(2013b).

한다(표 3-4 참조). 역량이 낮으면서 부채 취약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최소 양허성 기준 35%를 충족해야 하며, 비양허성 차관은 극히 제한된다. 부채 취약성이 낮은 국가의 경우 양허성 수준을 35%로 유지하되 비양허성 차관도 허용된다.<sup>44)</sup> 역량이 높은 수원국의 양허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부채 취약성이 높은 국가는 연간 부채 축적 규모 제한이 있으며, 부채 취약성이 낮은 국가의 경우 최소 평균 양허기준만이 적용된다. 여기서 평균 양허성 조건과 연간 부채 상환은 부채지속성 분석에 기초한다.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에<sup>45)</sup> 따라 차관의 양허수준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44) IMF의 부채제한 프레임워크하에서는 양허성 차관과 비양허성 차관이 모두 고려된다는 점에서 OECD 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여상당치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OECD DAC(2014g), para. 14).

45) 1978년 체결된 이 협약은 수출신용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정부보조 형태의 지원으로 인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신용의 지원요건(최소 이자율, 위험부담비용, 상환기간)과 구축성 원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글상자 3-3. 상업참고금리(CIRRs)

상업참고금리(CIRRs: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는 OECD의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에서 수출신용 공여 시 적용하는 최저 이자율로서 일반적으로 평균 국채 수익률에 1% 마진을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CIRR은 매달 15일부터 익월 14일까지 유효하며, 통화별 CIRR이 발표된다. 예를 들면, 2014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나라의 CIRRs은 3.76%이며, 미국은 5년 이하 만기채의 경우 1.97%이다. 일본은 5년 이하 만기채에 대한 CIRRs이 1.08%로 가장 낮다.

자료: OECD(2014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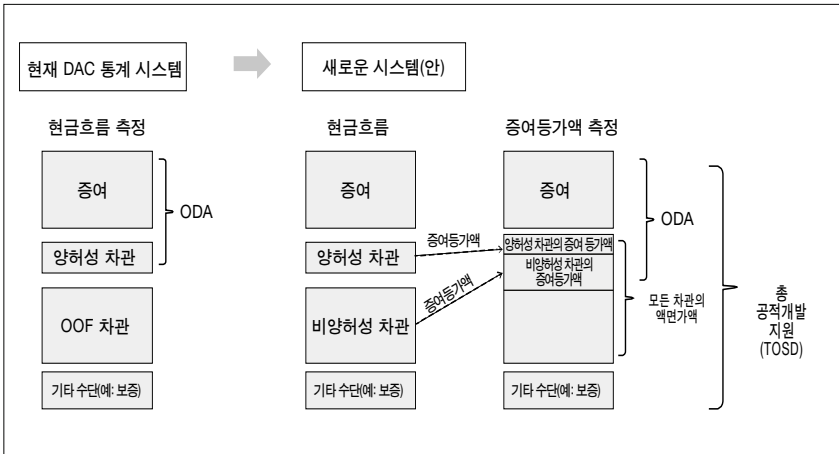
(DDR: Differentiated 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협정은 최소 양허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회원국은 양허수준이 35%(LDC의 경우 50%) 미만인 구속성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 DDR은 차관이 제공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1월 15일 업데이트된다. 일반적으로 DDR은 지난 6개월간 평균 CIRR에 일정 마진을<sup>46)</sup> 더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15~20년 차관에 해당하는 마진은 1%이다. 결과적으로 DDR은 국채 수익률보다 2% 높게 책정된다. DDR은 통화별 상이한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험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risk-free).

## 다. 증여등가액 도입

Expert Reference Group은 양허성 차관을 ODA로 계상하는 경우 지원 총액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을 사용, 공여국의 노력을 중립적으로(증여, 차관 등 금융수단이 아닌) 판단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증여등가액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제공된 차관의 증여등가액만을 ODA로 계상하며, 이로 인해 사실상 ODA와 OOF의 구

46) 기간별 마진: 15년 미만 0.75, 15~20년 미만 1.00, 20~30년 미만 1.15, 30년 이상 1.25  
(자료: OECD(2014a), p.23).

그림 3-5. 개발재원의 증여등가액 측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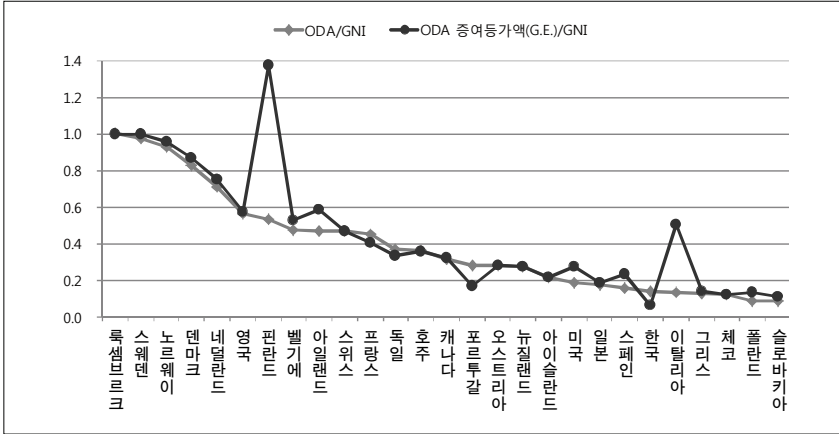
자료: OECD DAC(2014g, p.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재는 증여율이 25% 미만인 경우 OOF로 구분되는데, 증여등가액 방식을 적용하면 증여율이 25% 미만인 OOF의 경우에도, 해당 OOF의 증여등가액은 ODA로 계상되는 것이다.

DAC는 증여등가액 방식을 사용하여 개별 회원국의 GNI 대비 증여상당액 규모를 발표하였는데, [그림 3-6]은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증여등가액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기존의 ODA/GNI 수치와 크게 차이가 있는 국가는 핀란드, 이탈리아이다. 핀란드의 경우 ODA/GNI 비중은 0.53%이나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핀란드가 제공한 OOF의 상당 부분이 ODA로 계상된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함께 증여등가액 방식이 ODA/GNI로 계산된 규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0.06% vs. 0.14%),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6.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증여등가액 방식 vs. ODA/GNI

(단위: %)



주: 1) 증여등가액은 2011~12년 평균값이며,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된 할인율은 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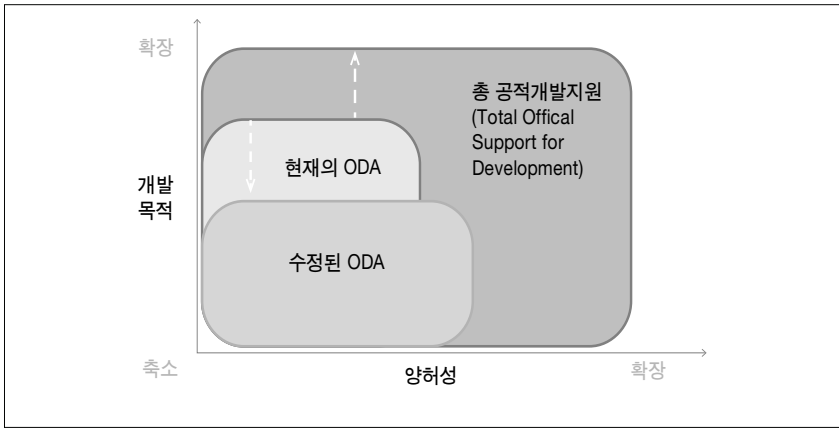
2) ODA/GNI 비중은 2012년 수치임.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7, Burden Sharing Indicators, Table 1, DAC Members' Net ODA in 20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3. 20).

##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자원 측정 수단: TOSD

DAC 회원국 차원에서는 ODA 개념 재정립과 관련하여 확대된 개념의 ‘개발을 위한 자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재 DAC 회원국 정부 예산이 주 출처인 ODA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동원된(leveraged) 민간 자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Girishankar (2009), Vanheukelom *et al.*(2012) 등은 ODA를 비롯한 개발자원의 범주와 범위를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공적개발지원(TO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①기존 ODA를 비롯하여 ②기타공적자금(OOF, 수출신용 제

그림 3-7. ODA와 총 공적개발지원(TO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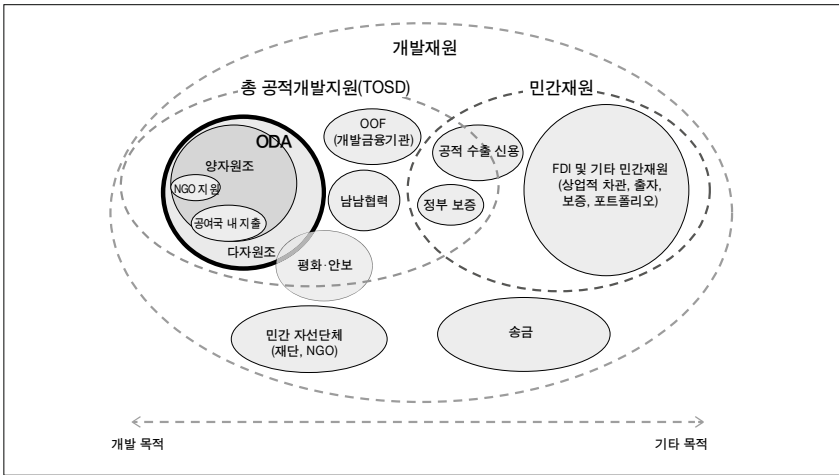


자료: Expert Reference Group Meeting(October 2013) Background Paper, No. 1.

외), ③공공재원으로 동원된 민간재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ODA 및 OOF의 경우 앞 소절에서 서술한 양허성 개념 보완을 포함한 현대화 논의와 함께 범주가 수정될 수 있다. 중여 정도가 낮은 비양허성 자금 및 상업적 성격의 자금도 개발 목적이 분명하다면 TOSD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개발재원에 관한 전문가자문그룹(expert reference group)은 TOSD와 개발재원을 자금의 유형을 포함하여 [그림 3-8]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한편 MDG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개발을 넘어 빈곤, 여성, 아동,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이슈를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불평등, 인권, 안보, 환경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enablers of development)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국가에는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이 이미 축적된 MDG의 성과와

그림 3-8. ODA·TOSD·개발자원



자료: Expert Reference Group Meeting(October 2013) Background Paper, No. 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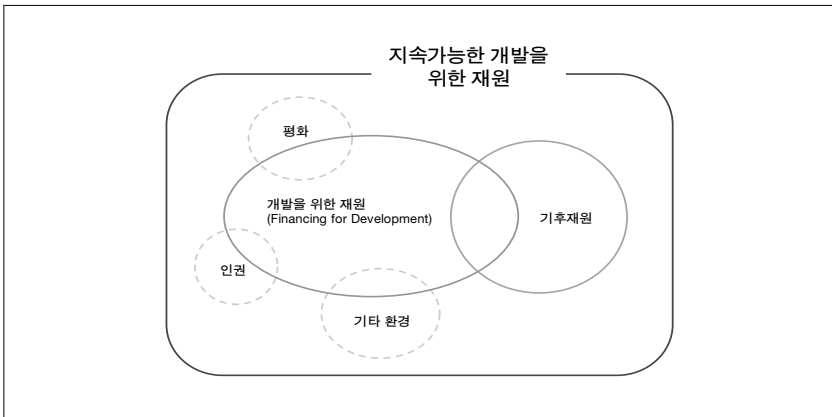
앞으로의 발전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 선정 과정에서 새천년개발목표의 연장선상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재조명하고,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평화와 안보, 공정한 글로벌 무역 체제 등 글로벌 공공재를 포함하여 개발자원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개발자원의 범주와 관련해서 현재 ODA가 다루지 못하는 개발 목적성 지원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Post-2015 개발의제와 SDG를 고려할 때 기존의 ODA보다 확장된 개념의 TOSD 개념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평화, 안보, 정의, 인권 보장,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TOSD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 3-9]에는 기존의 ODA 영역과 확장된 개념의 개발자원인 TOSD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기존 ODA의 목적은 빈

곤, 교육, 보건, 아동, 여성 등 MDG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ODA 적격기구에 대한 기여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서는 완화와 적응 관련 원조가 포함되며, 인권 및 난민지원과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ODA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 중 어느 범위까지를 개발재원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있다. 예를 들면 현재 UNDPKO 전체 사업 예산 75억 달러 중 7% 정도가 ODA로 계상되는데, 나머지 93%를 TOSD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sup>47)</sup>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군사 장비 및 서비스 지원이나 반테러 지원활동의 경우 ODA로 계상되지 않으며,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한해 ODA로 인정한다. 향후 TOSD의 범주에 관련 지출의 개발 목적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9. TOSD의 대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47) OECD DAC(2014c), Annex 1: A new measur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p. 11.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방식이 TOSD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고, 이에 따라 공여국들은 기후 관련 공적개발재원을 리우마커(Rio marker)를 통해 DAC 통계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 DAC에서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개도국으로의 자금 흐름, 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연구개발과 같이 초기 단계에는 개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TOSD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2010년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개도국들은 원조 전환을 우려하면서 기후재원 확대 목표는 ODA 확대 목표와 별개라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이미 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분리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보고서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신장과 공여국 내 난민보호를 위한 지원 범주도 새로운 TOSD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인권 분야는 개도국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본적 지원 범주이지만 MDG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ODA 통계는 난민 유입 시 첫째 지원비용을 ODA로 인정하지만,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ODA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도국 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ODA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한편,<sup>48)</sup> 개도국 유입자금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

---

48) 미국의 경우 2012년 난민을 지원한 8억 3,100만 달러가 ODA로 계상되었는데, 후속 연

표 3-4. ODA 중 행정비용 · 공여국 내 지출 · 난민지원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전체 ODA	양자간 ODA (A)	행정비용(B)		기타 공여국 내 지출(C)		공여국 내 지출 중 난민지원비용(D)	
			금액	(B/A)%	금액	(C/A)%	금액	(D/A)%
DAC 총합	126,881	88,550	6,667	7.5	4,650	5.3	4,340	4.9
호주	5,403	4,561	335	7.3	157	3.4	154	3.4
오스트리아	1,106	536	33	6.1	65	12.1	58	10.8
벨기에	2,315	1,433	91	6.4	139	9.7	126	8.8
캐나다	5,650	4,053	282	7.0	277	6.8	267	6.6
체코	220	66	5	7.5	11	16.4	10	14.3
덴마크	2,693	1,922	162	8.4	151	7.8	143	7.5
핀란드	1,320	799	81	10.2	33	4.1	23	2.9
프랑스	12,028	7,928	493	6.2	516	6.5	507	6.4
독일	12,939	8,584	492	5.7	160	1.9	76	0.9
그리스	327	107	10	9.5	20	18.6	20	18.6
아이슬란드	26	21	2	8.2	0	1.7	0	0.9
아일랜드	808	536	35	6.5	3	0.5	0	0
이탈리아	2,737	624	35	5.6	272	43.6	247	39.5
일본	10,605	6,402	794	12.4	4	0.1	1	0
한국	1,597	1,183	59	5.0	15	1.2	-	-
룩셈부르크	399	277	21	7.5	3	1.2	0	0
네덜란드	5,523	3,858	397	10.3	346	9.0	339	8.8
뉴질랜드	449	362	43	11.9	20	5.4	19	5.3
노르웨이	4,753	3,523	294	8.4	252	7.1	227	6.4
폴란드	421	112	-	-	-	-	-	-
포르투갈	581	397	11	2.8	2	0.4	1	0.2
슬로바키아	80	19	2	10.3	-	-	-	-
스페인	2,037	985	170	17.3	64	6.5	23	2.3
스웨덴	5,240	3,638	240	6.6	590	16.2	571	15.7
스위스	3,045	2,445	195	8.0	667	27.3	654	26.8
영국	13,892	8,709	528	6.1	55	0.6	45	0.5
미국	30,687	25,471	1,855	7.3	831	3.3	831	3.3

주: 2012년 순지출 기준.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13, Comparison of flows by type in 2012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_developingcountries.htm](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_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9. 20).

도 지원 규모를 더하면, 총 난민지원비용은 이보다 82% 증가한 15억 1,300만 달러로 추정된다(OECD DAC(2014k), p. 8.)

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표 3-4]를 살펴보면 미국의 공여국 내 난민지원비용이 8억 3,09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위스(6억 5,438만 달러), 스웨덴(5억 7,071만 달러), 프랑스(5억 694만 달러)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양자 ODA 중 난민지원 비중이 큰 국가는 이탈리아(39.5%), 스위스(26.8%), 그리스(18.6%), 스웨덴 15.7%) 등이다.

### 마. 수원국 관점

수원국 입장에서 개발재원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9)</sup> 우선 다양한 개발재원 공여주체의 등장으로 인해 현재의 ODA 통계가 제시하는 DAC 회원국 및 주요 공여기관, 다자기구의 수원국 지원 규모가 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수원국에 원조를 지원하는 비전통 공여국이나 민간 자선단체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공여국 위주의 ODA 측정방식이 아닌, 수원국에 유입되는 개발재원의 전반적인 파악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환경변화도 수원국 입장에서 개발재원을 재검토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DAC 회원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ODA 규모의 감소, 기존 저소득 국가의 중소득국으로의 경제적 지위 상승, 이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및 원조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이 수원국 입장에서 개발재원의 규모와 구성요소를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OECD 통계 작업반에서는 공여국의 차관금리가 수원국이 국제시장에서 조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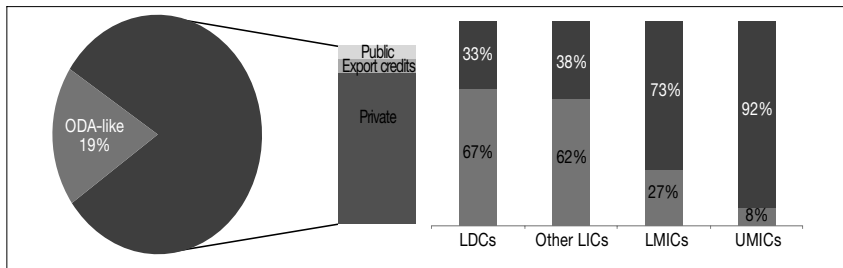
---

49) 수원국 입장에서의 개발재원 구조 연구배경은 Greenhill, Prizzon and Rogerson(2013, p. 1)에서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보다 더 저렴한 경우(개도국의 이자부담이 적어지는 경우) 이것을 ODA 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DAC 사무국은 2012년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개발재원에 대한 공여국 노력과 수원국 이익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글상자 3-4 참고).

DAC 회원국의 개도국 지원자금 유형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보면 [그림 3-10]과 같이 수원국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민간지원보다는 ODA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년대비 자금 흐름의 변화에서도 2012년도 ODA 지원 감소액(△77억 달러)보다 민간 증여 및 민간 자본 유입의 감소액(△208억 달러)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민간자금이 경제위기 등 외부충격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빈국이나 저중소득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재원의 특수성과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sup>50)</sup>

그림 3-10. DAC 회원국의 소득수준별 개발재원 제공 현황



주: 2012년 기준.

자료: OECD Aid Statistics([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_developingcountries.htm](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_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2. 20).

50) OECD DAC(2014i).

한편 수원국에 유입되는 ODA와 기타 외부재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앞

표 3-5. 소득 수준별 개발자원 유입 현황(2011)

	취약/최빈국 (33개국)	비취약국 (15개국)	기타 취약국1 (16개국)	저중소득국 (22개국)	고중소득국2 (60개국)
최빈국	0	0	x	x	x
IDA 적격국	0	0	0	0	x
취약국	0	x	0	x	x
<b>개발 자원</b>					
ODA(백만 달러)	38,535	11,003	18,248	17,821	28,217
(비율)	(34%)	(10%)	(16%)	(16%)	(25%)
1인당 ODA	51	79	30	13	10
2010~11 증감률	-10%	-5%	-3%	1%	10%
ODA/GDP	7%	10%	2%	0.9%	0.2%
ODA(채무상환 제외)/GDP	5%	10%	2%	0.9%	0.2%
무상원조 비율	88%	81%	68%	43%	55%
기타 외부자원(백만 달러)	16,418	3,571	50,239	82,638	449,891
(비율)	(3%)	(1%)	(8%)	(14%)	(75%)
ODA/총 외부자원	70%	75%	27%	18%	6%
정부 총 세입/GDP	23%	23%	26%	20%	26%
조세수입/GDP	20%(양골라 11% 제외)	17%	12%	17%	19%
정부 지출/GDP	24%	27%	31%	28%	28%
국내 자원 대비 ODA 비율:					
ODA/정부 총세입	28%	43%	7%	4%	0.6%
ODA/조세 수입	43%	59%	13%	5%	0.8%
ODA/정부 지출	28%	36%	6%	3%	0.6%

주: 1) 기타 취약국 중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는 IDA 비적격 국가<sup>51)</sup>이나 기타 취약국 그룹에 포함됨.

2) 적도 기나는 최빈국에 속하지만 고중소득국 그룹에 포함됨.

자료: OECD DAC(2014m), p. 12, Table 1을 저자 재구성.

51) IDA 적격국이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한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기금을 뜻하며, 2015년 기준 1인당 GNI가 1,215달러 미만인 국가로 정의된다. 2014년 현재 IDA 적격국가는 77개국이다.(<http://www.worldbank.org/ida/borrowing-countries.html>, 최종 검색일: 2014. 9. 22)

### 글상자 3-4. 2014 OECD 개발재원 워크숍 주요 결과

2014년 6월 25일 개최된 OECD 개발재원 워크숍에서는 가나, 세네갈, 동티모르의 사례를 통해 수원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의 종류와 방식을 파악하고 각 국별 상황에 따라 새로운 측정방식의 선호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수원국은 더욱 다양한 자금지원 수단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개발전략상 대규모 자금 동원이 필요한 인프라개발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자금지원 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둘째, 수원국은 가장 선호하는 개발재원의 형태로 공적 무상증여와 차관을 들었다. 특히 자금의 유연성과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신속한 자금조달 및 국가개발전략에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발재원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원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나와 세네갈과 같이 재정상태가 긴축적인 국가에서는 재원의 형태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넷째, 자선단체를 통한 개발재원의 경우 수원국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례 중심의 단편적 파악에만 그쳤으며, 기후재원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체로 ODA 채널을 통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 재원을 마련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현지의 프로포절 작성 능력을 키우는 등 수원국 수요를 맞추는 데 보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의 규모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원국이 전략적으로 개발재원의 우선적 지원 분야(예를 들어, 지원이 부족한 분야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공여국 및 새로운 개발재원 제공 주체가 자금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개발재원 출처와 방법에 따른 발전 영향력 및 효과성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수원국 이익이 반영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 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post-2015 개발재원 측정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보다 기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원국이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 순지출이 아닌 총합 규모, 자금의 출처에 대한 상세 명시, 차관의 경우 액면가치를 표기하고, 양허성 여부 명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료: OECD(2014c).

그림과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표 2-3 참고). 우선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개발재원이 개도국 정부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 소득수준이 낮고 취약국인 경우 ODA 수원규모가 385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위중소득국의 수원규모가 다른 소득수준의 개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82억 달러). ODA를 제외한 기타 외부유입 재원은 최빈국보다 중소득국 그룹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전체 개발재원(외부재원)

대비 ODA 비중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외부 개발자원 대비 ODA 비중이 안정적 최빈국의 경우 75%, 취약국이자 최 빈국인 경우 70%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취약국의 ODA 비중은 27%, 하위중소득국은 18%, 상위중소득국은 6%에 그쳤다.

## 제4장 개발자원 확대를 위한 민간자원 동원방안

1. 민간자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자원 동원 사례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자원



최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 정부예산으로 제공되는 ODA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발재원에서 ODA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외부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되는 자금 중 OD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1990년대 초 100여개국에서 2011년 43개국으로 감소한 현상으로도 설명된다.<sup>52)</sup>

OECD DEV(2012)는 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수요 대비 공급의 차이를 약 1,20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sup>53)</sup> 이는 DAC 회원국이 연간 제공하는 총 ODA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GNI 대비 ODA 비중을 0.7%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하였으나,<sup>54)</sup>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자국 내 ODA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몇몇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들은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도국 차관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여국 입장에서는 정부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재원의 규모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이차보전이

52) European Parliament(2014), p. 12.

53) OECD DEV(2012), pp. 27~28. OECD는 2015년까지 MDG 목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수요(financing gaps)를 20개의 저소득국 621억 달러, 79개의 기타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 592억 달러를 합하여 총 1,213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54) 2013년 잠정 통계 기준 0.7% 목표에 도달한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에 불과하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지원자금을 ODA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DAC는 지난 2012년 EU에 대한 동료검토에서 유럽투자은행(EIB)이 제공한 양허성 차관에 대해 ODA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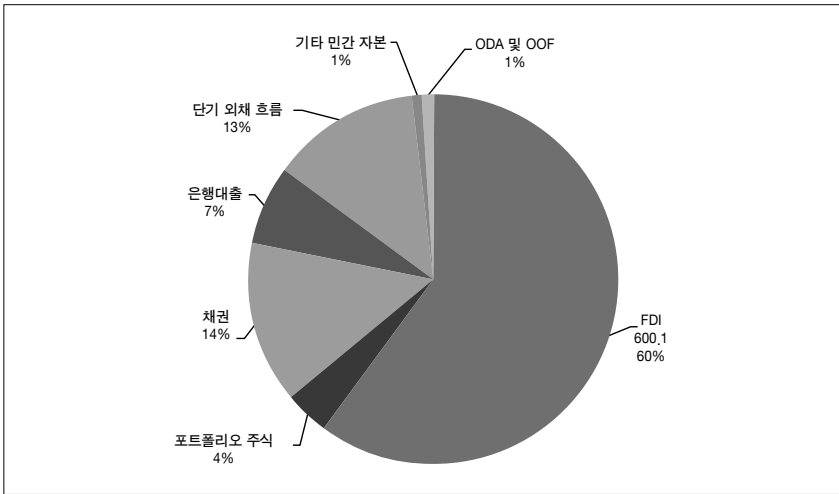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잠재적 출처로서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Post-2015 체제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분석한다.

##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Post-2015 체제하에서 개발재원 조성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선진국 정부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에만 의존하는 것은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는 취약국과 최빈국, 그리고 ODA 이외의 개발재원에 접근이 어려운 국가를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중소득국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을 레버리지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중 ODA와 OO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1%에 불과한 반면, FDI는 6,000억 달러에 달해 60%를 차지했다(그림 4-1 참고). 또한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역량이 제고된 결과 채권, 은행 차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네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2년 개도국 유입 개발재원의 유형별 비중



주: 세계은행은 2012년 기준 개도국으로 유입된 자금을 1조 달러로 추정.  
 자료: World Bank(2013), p. 23.

개발재원의 잠재적 출처로서 민간재원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민간재원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민간 부문은 위험과 수익의 적절한 조합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민간 부문의 장기적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공공기관의 사례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유럽위원회는 ODA의 촉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ODA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sup>55)</sup> 투자 위험을 줄임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는

55) European Commission(2013), pp. 120~124.

곧 개발재원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ODA와 개발금융 기관 또는 개발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비증여성 자금을 혼합하여 개도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때 ODA(증여성 자금)의 역할은 비증여성 자금 제공자가 감내해야 하는 위험 수준을 낮추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을 여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ODA는 비증여성 자금의 출처인 자본시장으로부터 재원 조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비증여성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개발효과성보다는 예상 금융수익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증여성 자금 유인을 위해 사용된 ODA의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증(guarantee) 역시 민간재원을 동원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DAC 조사에 따르면<sup>56)</sup> 2009년과 2011년 사이 개발목적으로 사용된 보증이 조달한 민간재원은 총 153억 달러에 이르며, 2009년 32억 달러에서 2011년 64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다. 개도국 내 민간자금이 보증으로 동원되기도 하는데, 2009년과 2011년 사이 전체 보증으로 조달된 자금 출처의 15%가 개도국에 해당됐다. 보증 계약 건수 기준으로 40%가 최빈국 사업에 제공된 반면, 자금조달 규모 기준으로는 50%가 고중소득국에 제공되었다. 대체로 차관 보증이 주로 사용된 반면(계약건수 기준 70%), 출자에 대한 보증은 25%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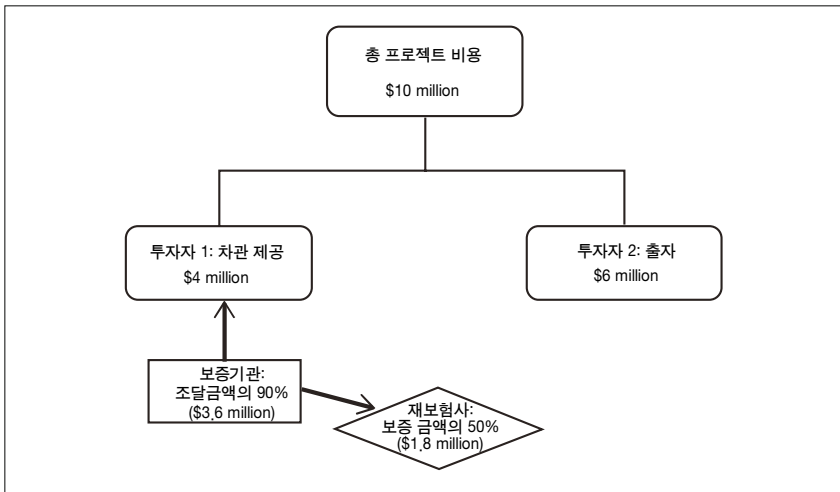
보증으로 조달된 민간재원의 규모는 DAC 회원국 ODA의 20분의 1 수준이나,<sup>57)</sup>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

---

56) Mirabile, Benn, and Sangaré(2013). 이 조사는 DAC 회원국 및 비회원국 12개국, 17개 국제금융기구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제공한 보증 계약에 대해 수행되었다.

다. 다만 보증의 개발재원 조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보증은 ODA로 계상되지 않는데, DAC 통계작성반에서는 2012년 HLM 지침에 따라 보증의 통계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림 4-2. 보증 활용 방식



자료: Mirabile, Benn, and Sangaré(2013), Figure 1을 저자 재구성.

##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몬테레이 개발재원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이후 ODA 이외의 여타 개발

57) 참고로 2011년 기준 ODA 규모는 1,340억 달러(순지출 기준)이다.

재원의 역할은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개발재원의 출처가 국내 및 국제, 공공 및 민간 등 다양해짐에 따라 개도국, 특히 중소득국의 경우 ODA 이외의 개발재원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가 감소하였는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개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비양허성 자금이 개도국 인프라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인 개발금융기관으로서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의 개도국 지원 규모는 2012년 기준 700억 달러(총지출 기준)에 달했는데, 이 중 비양허적 지원이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비양허적 지원의 95%가 중소득국에 제공되었다. 분야별로는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 비중이 각각 47%와 3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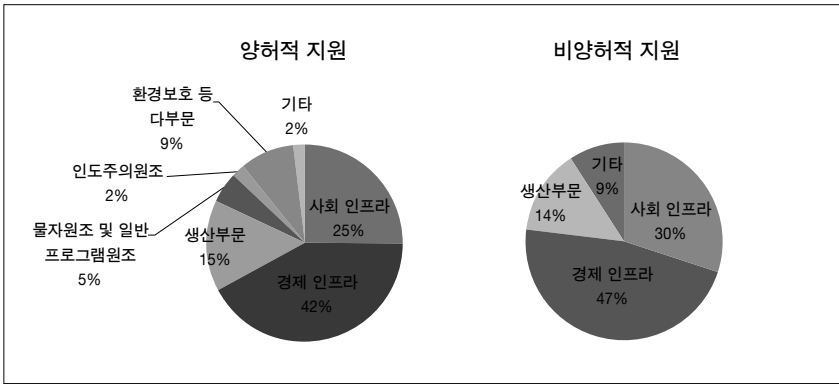
표 4-1.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비양허성 지원 규모 및 비중

기관명	비양허성 지원 (십억 달러)	전체 지원 중 비중 (%)
IBRD/IDA	15.14	60
ADB	6.90	79
IaDB	6.51	80
IFC	6.41	100
AfDB	3.51	65
EBRD	3.34	100
IsDB	1.30	82
EIB	0.76	11

주: 2012년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DAC(2014b), Table 4.1을 저자 재구성.

그림 4-3. 국제금융기구의 분야별 지원 현황



주: 2012년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DAC(2014b), Table 4.1을 저자 재구성.

개발금융기관이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원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혼합금융, 보증, 출자 및 메자닌(mezzanine) 금융이다. 혼합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인 혼합차관은 예산(정부 및 기관 차원의)과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구성되며, 양허적 및 비양허적 요소를 모두 갖출 수 있다. 혼합금융은 경제적으로 추진가능하나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시장조건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에 적합하다. 혼합금융 방식은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양자 개발금융기구인 KfW, AFD, EIB 등에서 사용된다.

대표적인 비증여수단(non-grant instrument)인 보증은 개발재원의 범주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간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위험을 보증 제공기관이 보장함으로써 재원을 제공하는 방식인 보증은 개도국 사업자에게는 유용한 수단이다. 2009년에서 2011년 기간 중 개발 목적에 사용된 보증의 50%가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제공된 것

표 4-2. 주요 개발금융기관이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 현황

기관명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 (2009~11년, 백만 달러)	
오스트리아 Oesterreichische Entwicklungsbank AG	304,3	
핀란드 FINNVERA	209,1	
프랑스 AFD PROPARCO	1116,1	
독일 KfW DEG	62,9	
노르웨이 NORAD NORFUND	29,7	
포르투갈 SOFID	3,7	
스웨덴 SIDA	12,6	
미국 USAID OPIC	5,621,2	
국제금융기구	AfDB	139,5
	IaDB	69,8
	IBRD/IDA	1,496,2
	IFC	1,199,9
	IsDB	430,9
	MIGA	4,4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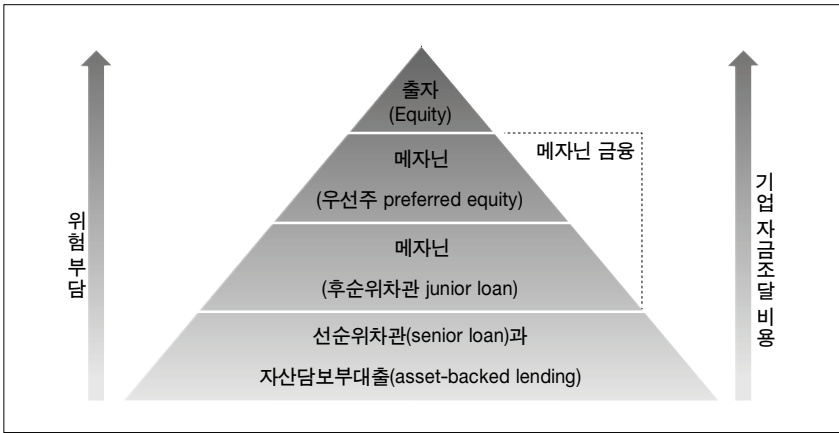
자료: Mirabile, Benn and Sangaré(2013), Annex 1을 저자 재구성.

으로 나타났다.<sup>58)</sup> IFC(2014)는 보증이 자금 조달비용을 가시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양허성 자금과 같이 시장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자 및 메자닌 금융은 민간기업의 창업 또는 확대 시 중요한 자금 출처이다.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은 위험부담, 수익, 디폴트 시 변상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그림 4-4]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단계가 상승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상승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일반적인 개발협력기관은 출자를 통해 가장 높은 위험

58) Mirabile, M., J. Benn and C. Sangaré(2013).

그림 4-4. 위험도 및 자본 조달비용에 따른 자금 유형



자료: OECD DAC(2013), p. 10.

을 부담하며, 개발금융기관의 경우 메자닌 단계의 자금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위험을 일부 부담함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출자와 메자닌 금융은 효과적인 재원동원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나. 독일

KfW 개발은행(이하 KfW)은 ODA 총괄 연방부처인 경제협력개발부(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산하기관으로 금융협력을 담당하는 개발금융기관이다.<sup>59)</sup> 그동안 KfW

59) BMZ 산하기관으로 금융협력을 담당하는 KfW 은행그룹 외에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독일국제협력청(GIZ: Germ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있다. KfW 은행그룹(KfW Banking Group)은 5개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KfW 중소기업은행(SME bank), KfW 지원은행(promotional bank), KfW 프로젝트/기업금융은행(IPEX Bank), KfW 개발은행, 독일투자개발공사(DEG: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가 포함된다(권 울 외(2008), pp. 106~107).

그림 4-5. KfW의 금융협력 수단



자료: 저자 작성.

는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허성 차관을 주로 공여해왔지만, 최근에는 지원수단을 보다 다원화하여 상대적으로 양허성이 낮은 개발차관 (development loans), 상업성이 강한 프로모션 차관(promotional loans)을 대상 분야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하는 추세이다.

2012년 기준, 독일이 제공한 개발금융 규모는 약 62억 유로이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을 주로 지원하는 독일투자개발공사(DEG)의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5년간 KfW의 지원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개발차관 비중이 3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프로모션차관 29%, 증여 27%, 표준차관 5%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10년 개발차관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가 2011~12년으로 들어서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프로모션차관은 이 기간 감소하였다가 확대되어 2012년에는 개발차관과 프로모션차관의 규모가 각각 16억 유로로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차관의 경우 2008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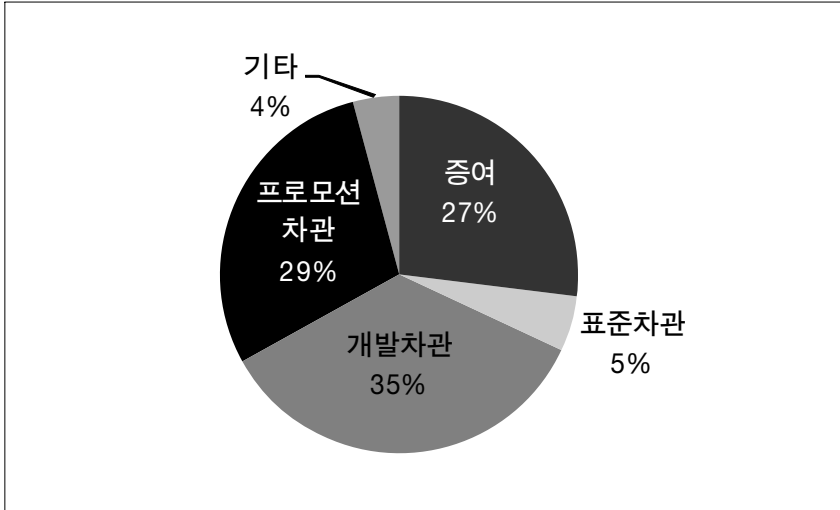
표 4-3. 독일의 개도국 금융협력 현황

(단위: 백만 유로)

		2008	2009	2010	2011	2012	
KfW	증여	882	1,112	1,036	1,336	1,347	
	양허성 차관	표준 차관	351	230	179	145	179
		개발 차관	1,034	878	2,142	1,713	1,599
	프로모션 차관	1,314	1,151	913	996	1,603	
	기타	68	111	183	343	187	
	합계(A)	3,648	3,482	4,452	4,532	4,916	
DEG (B)		1,225	1,015	1,226	1,223	1,328	
합계 (A+B)		4,873	4,497	5,678	5,755	6,244	

자료: KfW(2013), p. 55.

그림 4-6. KfW 금융협력 수단별 지원비중



주: 2008년~12년 평균.  
 자료: KfW(2013), p. 55.

KfW의 개도국 금융협력 재원은 독일 정부의 ODA 예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조달된다. KfW는 통상적으로 재원의 약 3분의 2를 시장에서 조달한다. 2012년 기준 약 31억 유로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지난 10여년간 200억 유로 정도를 시장에서 조달하였다. KfW는 개발차관은 정부 ODA 예산과 시장재원을 혼합사용하며, 프로모션 차관의 경우 전부 시장재원으로 제공한다.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제약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조달을 통한 개발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은 KfW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받는다.<sup>60)</sup> 지난 10여년 동안 독일의 개발금융은 연평균 1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보다는 KfW의 시장조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DEG는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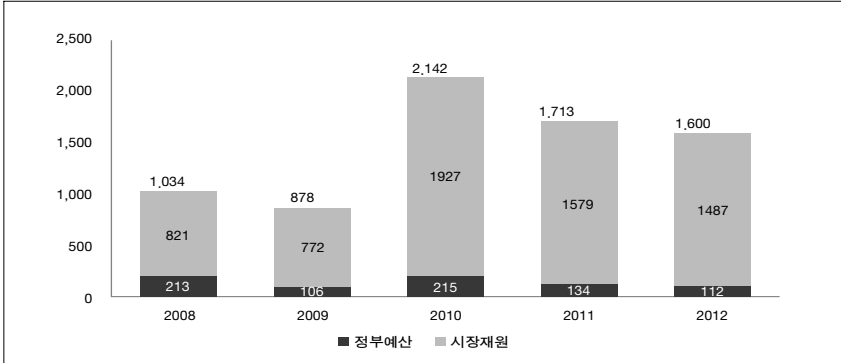
개발차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중소기업 지원, 산업개발 분야에 개발차관이 활용된다. 개발차관 재원은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된다(그림 4-7 참고). KfW는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하되 대출조건은 ODA 적격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공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이차보전과 지급보증이 수반된다. 위험분담 차원에서 KfW는 수원국의 채무상환능력, 정부의 지급보증 등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개발차관 방식을 사용한다.<sup>61)</sup>

60)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2014), p. 36. 아울러 1948년 설립 이후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금융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KfW의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예산 외에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 역시 이러한 금융 전문성에 크게 기반을 둔다. KfW는 은행으로서 신용도 등급이 AAA이고 연방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61) 정혁(2013), p. 231.

그림 4-7. KfW 개발차관 규모 및 재원출처

(단위: 백만 유로)



자료: KfW(2013), p. 55.

개발차관은 혼합금융(mixed finance), 복합금융(composite finance), 저금리차관(reduced-interest loan)으로 구분된다. 1963년에 도입된 혼합금융은 정부예산과 시장재원의 혼합자금으로 구성된다. 혼합금융은 KfW가 대상지원국 국가위험의 일부를 책임지고, KfW의 자체적인 신용위험은 Euler-Hermes와 같은 공공 수출신용기관이 보증한다. 이 때문에 혼합금융 사업은 KfW에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신용기관의 요구조건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994년에 도입된 복합금융의 경우 KfW와 수출신용기관이 공동으로 지급보증하는 혼합금융과 달리 독일 정부가 직접 지급보증을 한다. 이로 인해 외국기관의 참여 사업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혼합금융과 달리 복합금융은 외국업체의 참여가 필요 없고 주로 채무 문제가 없는 국가에서 현지조달을 통해 주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사회 인프라, 산업·환경 기술 분야 사업에 활용된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저금리 차관의 경우 개도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 지원과 경제·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목

적으로 한다. 저금리차관은 KfW가 시장조건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며, 정부가 지급보증한다. 정부예산을 통한 보조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이를 통해 파트너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예산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ODA 적격성도 충족시킨다.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에 저금리차관을 제공하여 자체적인 대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적용 금리와 거치기간을 보면 혼합금융은 정부예산과 시장재원의 지분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 정부예산은 금리가 0.75~2%로 낮고 대출기간이

표 4-4. KfW 금융협력 수단별 지원조건

지원수단		금리, 상환기간(거치기간)	지원 대상	재원조달	ODA 적격성
증여		- 무상	- 최빈개도국 - 기후변화, 빈곤퇴치, 젠더 프로젝트	정부 예산	100%
IDA 기준 차관		- 0.75% - 40년	- 1인당 평균소득 1,905달러 미만 저소득국		100%
표준차관 (standard loan)		- 2% - 30년	- 1인당 평균소득 1,905달러 이상 개도국		100%
개발 차관	혼합 금융	정부 예산 - 0.75~2.0% - 30~40년(10년)	- 1인당 평균소득 1,905달러 이상 개도국 - 대규모 인프라	정부예산 + 시장재원	100%
		시장 재원 - 4.2~5% - 10년(0.5년)			
	복합금융	- 재원 혼합비중에 따라 다양(2.0~5.0%) - 25년(사업기간 따라 변동)			
	저금리차관	- 4.25~5.0% - 10~12년(2~3년)	- 금융기관 지원,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프로젝트		
프로모션차관 (promotional loan)		- 시장조건	- 고소득국 - 상업성+개발목표 충족 사업	시장재원	50%

자료: 정 혁(2013, p. 233); KfW 웹사이트(<https://www.kfw-entwicklungsbank.de/>, 검색일: 2014년 6월 2일).

30~40년으로 장기인 반면, 시장재원은 금리가 4.2~5%로 높고 대출기간은 10년이다. 복합금융은 정부예산과 시장재원의 혼합비중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ODA 금리 2%와 시장금리 5% 사이에서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25년이다. 저금리 차관의 경우 정부지원분은 증여이고, KfW 지원분은 4.25%에서 5% 사이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10~12년 수준이다.

#### 다. 프랑스

프랑스개발청(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은 원조집행기관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개발금융을 제공한다. AFD의 전신인 프랑스개발금고(CFD)는 1941년 설립되어 프랑스령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차관을 제공해왔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1998년 4월 AFD로 승계되어 개도국 전체를 대상으로 ODA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sup>62)</sup> 현재 AFD는 은행법 상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는 개발금융기관으로서 프랑스 은행감독기구의 감독과 규제를 따른다. 이와 같이 개발금융을 담당하는

표 4-5. AFD의 역할과 성격

공공 산업/상업기관	특수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파산법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음: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li> <li>• 프랑스 정부의 재무보증: AFD 채무불이행 상황인 경우 프랑스 연방정부가 대신 지불 의무</li> <li>• AFD 지불능력은 프랑스 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이익을 위한 금융기관</li> <li>• 유럽 은행규제법 적용대상</li> <li>• AFD 채권: 바젤Ⅱ에 따른 20% 위험가중치 적용</li> </ul>

자료: AFD(2014b), p. 12.

62) 김정해 외(2012), p. 196.

AFD는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부 예산을 활용하여 증여와 기술협력도 제공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이며, 주로 양허성 차관과 개발금융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sup>63)</sup>

AFD는 자회사인 PROPARCO와 함께 프랑스의 개도국에 대한 금융협력을 주도한다. AFD의 지원수단에는 차관, 증여 및 보조금, 보증, 부채경감, 지분투자 등이 있다. 먼저 차관은 크게 개도국 중앙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기관 차관(sovereign loan)과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상업은행과 국공은행, 민간단체, NGO 등에 대한 비국가기관 차관(non-sovereign loan)으로 구분된다. 국가기관 차관은 주로 부채 수준이 낮거나 고채무 상황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를 통해 부채탕감을 받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지급보증한다.<sup>64)</sup>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비국가기관 차관은 국영기업, 지자체, 은행, NGO 외에 민간기업에 대한 이차보전(subsidized loan) 형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비국가기관 차관은 프랑스 정부 및 개도국 정부 측의 지급보증이 없기 때문에 AFD가 자체적 관리메커니즘을 통해 위험을 감당한다. 최근에는 특히 대규모 인프라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4-8]을 보면 AFD와 PROPARCO의 금융협력 규모는 2013년 지원액 기준 약 60억 유로 수준인데, 그중 비국가기관에 대한 차관이 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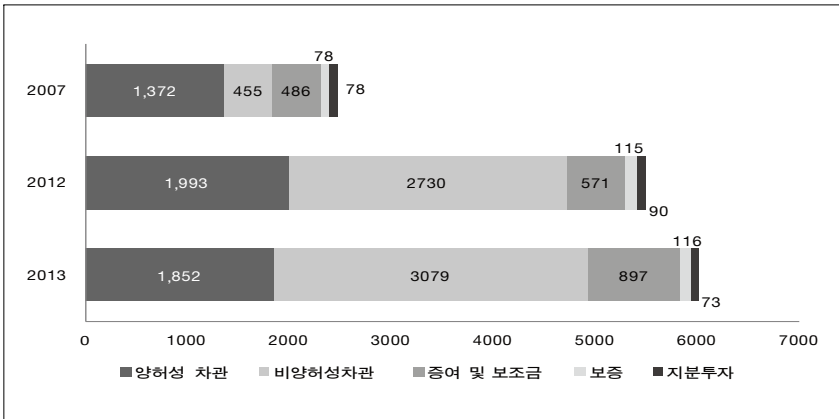
63) AFD 홈페이지(<http://www.afd.fr/lang/en>; 검색일: 2014. 5. 28); 정 혁(2013), p. 244 참고.

64) HIPC(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의 혜택국에는 대표적으로 카메룬, 가나, 세네갈 등이 있다.

7,900만 유로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국가기관 차관 18억 5,200만 유로(25%), 증여 및 보조금 8억 9,700만 유로(12%), 보증 1억 1,600만 유로(1.5%), 지분투자 7,300만 유로(1%)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특히 비국가기관 차관은 2007년보다 약 7배 증가한 수준이어서 지난 5년간 프랑스의 금융협력 확대를 주로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AFD의 비국가기관 차관은 독일 KfW와 같이 지원대상, 분야, 국가에 따라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기관, 사업, 국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을 하되 프랑스 정부 및 수원국 정부의 보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정부 지급보증 없이 AFD가 직접 위험부담을 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적인 관리가 가시적이다.<sup>65)</sup>

그림 4-8. AFD 금융협력 수단별 지원규모 변화

(단위: 백만 유로)



자료: AFD(2014a), p. 12.

65) 정 혁(2013), p. 260에서는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독일 정부예산과 시장조달 재원 간의 비중조정에 따른 위험분담 및 관리, 정부 및 ECA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기관 차관, 비국가기관 차관 모두 양허성 혹은 비양허성으로 제공 가능하다. 최근 금융위기로 유동성 부족 문제와 보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비양허성 차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비양허성 국가기관 차관의 경우 세네갈의 공공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원되었다. 비양허성 차관은 사회·환경·경제파급효과 등 사업의 성격, 비즈니스 분야·신용등급·지급보증 여부 등 채무자의 지위,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업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에는 지원대상국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경기조정차관(countercyclical loan)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을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 곡물 등의 경우 국제가에 따라 채무자의 주기적 사이클이 있는 경우 상환 및 만기 조건을 다원화한 차관을 제공하기도 하며,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에 취약한 농가를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세네갈의 경우 위생프로젝트에 대해 양허성이 높은 경기조정차관을 지원받아 큰 혜택을 얻었다.<sup>66)</sup>

한편 증여와 보조금은 보건, 교육, 소규모 농업과 같이 차관지원이 적합하지 않으며 직접 수익창출 효과가 없지만 개발에 중요한 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주로 아프리카 최빈국과 NGO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sup>67)</sup> 보증은 자산투자, 일자리 창출과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를 위해 중소기업에 용자를 제공하는 상업은행과 국공립은행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차관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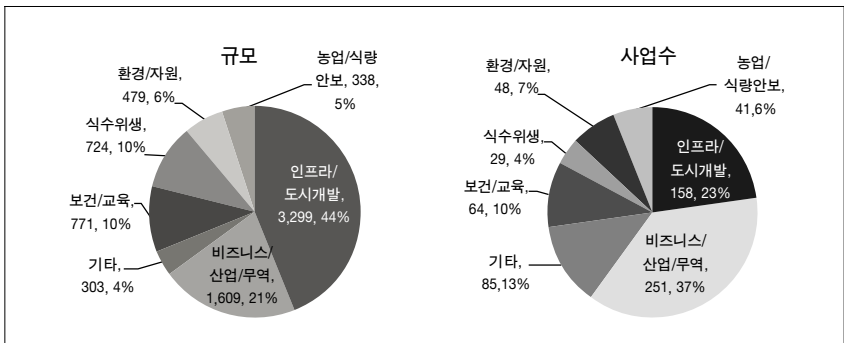
66) AFD 홈페이지(<http://www.afd.fr/lang/en/home/outils-de-financement-du-developpement/prets>, 접속일: 2014. 5. 29) 참고

67) 증여와 보조금은 프랑스의 원조우선그룹인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주로 지원되며, 차관과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의 품질과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평가를 거친다.

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한다. AFD의 자회사인 PROPARCO는 중장기 상업금융 조달이 어려운 개도국의 민간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 채무보증, 중장기대출 등을 제공한다.

2013년 기준 AFD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보면 인프라와 도시개발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44%(규모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12%가 에너지 분야 사업이다. 그 밖에 비즈니스·산업·무역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다. 지역별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전체 지원의 37%가 집중되었다. 지원수단을 보면 양허성 차관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나 PROPARCO를 통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16%)과 비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15%)도 많았다. 보증은 전체 지원 중 4%에 그쳐 제한적이었고, 증여와 보조금도 7%에 머물렀다. 양허성 차관 및 비양허성 차관, PROPARCO를 통한 지원은 대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중점지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AFD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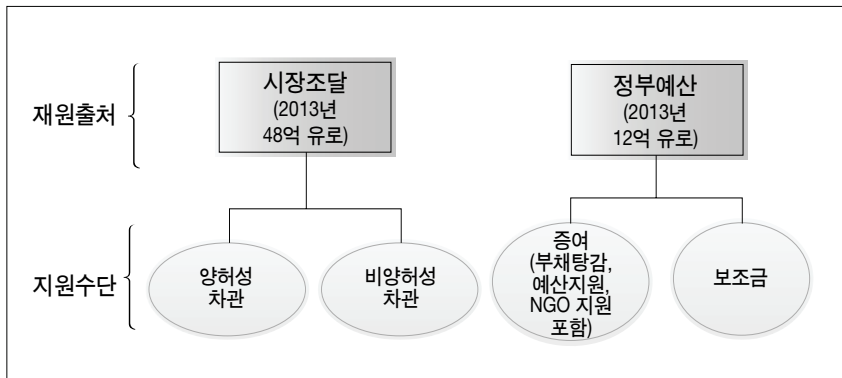


주: 2013년 기준.  
 자료: AFD(2014a), p. 13.

AFD는 정부예산 외에 독일 KfW와 마찬가지로 국제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2013년에는 정부예산 12억 유로의 5배에 가까운 48억 3,700만 유로를 시장에서 조달하였다. 프랑스 정부기관으로서 정부가 지불능력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처럼 AFD는 KfW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혁신적인 협조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재원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와 투자에 대한 수익창출 효과를 동시에 획득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sup>68)</sup>

즉, 정부 ODA 예산은 주로 최빈국과 개발목적이 강한 사업에 대한 증여 및 보조금, 부채탕감, 예산지원, NGO 지원에 집중하고, 양허성 차관과 비양허성 차관은 시장조달 자금을 주로 활용한다. 증여와 NGO 지원은 외교부 예산, 예산지원과 부채탕감은 경제재정부 예산을 활용한다. 정부

그림 4-10. AFD 재원출처 및 지원수단



자료: AFD(2014a), p. 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68) AFD(2014a) p. 18; AFD 홈페이지(<http://www.afd.fr/lang/en>, 검색일: 2014. 5. 29).

예산을 활용하여 양허성 차관과 비양허성 차관의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지원대상 지역 별로 보면 정부예산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주로 증여, 부채탕감, 예산지원과 NGO 지원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중소득국은 양허성 차관을 주로 활용하고 고중소득국이나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은 100% 시장조달 자금만을 활용한다.

개발금융은 전통적 ODA인 증여, 양허성 차관과 비교할 때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개도국의 입장에서 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경감하는 등의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공여국에서 개발금융기관은 ODA를 제공하는 원조기관이자 동시에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개발금융 수단인 비국가기관 차관(non-sovereign)의 경우 수원국 정부나 공여국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공여기관, 즉 개발금융기관이 직접 위험부담을 감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국가의 부채수준과 정치·사회적 불안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후 상환 불이행의 위험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조달 자금을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은 AFD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먼저 AFD는 특수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을 따르고 적절한 지급여력비율(solvency ratio)을 유지하는 등 신용기관에 대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실제 AFD의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29.1%, 24%, 19%를 기록,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지속적으로 크게 상회하는 등 규정보다 높은 자본화(capitalization)를 달성하고 있다.<sup>69)</sup>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능한 신용위험을 분석한다. 즉, 지원 분야별, 지원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등 장기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아울러 3개월마다 모든 차관 포트폴리오의 품질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자금세탁,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부패 등의 불법적 목적으로 자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새로운 반부패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적 자금유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절차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적절한 자금운용, 보고의 신뢰성, 법·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 AFD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 위험방지 및 경감을 전담하는 ‘위험관리부’를 별도로 두고 모든 차관사업을 초기 발굴 및 계획 단계부터 검토한다. 위험·관리부에서는 지원대상의 유형, 지원대상국의 금융시스템 및 정치·사회적 위험, 국제환경 등 모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위험을 유형별로 구분한다. AFD는 차관 프로젝트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였다. 지원대상 지역이나 국가, 분야의 다원화도 강조한다. 상시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내부감사위원회에서 모든 부서의 적절한 자금운용 여부, 위험수준, 규제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 및 관리시스템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감사위원회의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는 내부관리위원회(Internal Control Committee)에 제출된다.

---

69) 정 혁(2013), p. 250, 재인용: AFD(2014b), p. 19 참조.

금융 측면의 위험관리 외에 지원 사업이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인권, 젠더, 개발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 비금융 측면의 위험관리도 철저히 실시한다. 사업발굴 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외에도 현지 주인의식, 조화, 개도국 정책 일치 등 원조효과성 원칙에 부합되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추가성의 원칙에는 부합되는지,<sup>70)</sup> AFD와 프랑스의 개발정책에는 부합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밖에 기술·제도·경제·재정·환경·사회·이해관계자 측면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의 2차 검증도 받는다.<sup>71)</sup>

표 4-6. AFD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분	내용
금융규제 준수	- 적절한 지급여력비율 유지 : 지원대상 장기상환능력 검토, 3개월마다 차관포트폴리오 품질 검토 - 불법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감시 절차 도입
내부관리 시스템	- 모든 차관사업 관련 위험요인 검토 및 관리 : 사업운영 단계 문제입력 시스템 구축 - 내부감사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활동
환경/사회위험관리, ODA 부합도 검토	- 사업 발굴, 협력기관 선정 단계부터 환경, 사회 측면 위험요소 및 파급효과 검토, 관리 - 원조효과성 원칙, 개발목표 부합도 검토

자료: AFD(2013), p. 18; AFD 홈페이지 참고(<http://www.afd.fr/lang/en>, 검색일: 2014. 5. 29).

70) Spratt and Collins(2012), p. 1~2에 따르면 개발금융에 있어 추가성(additionality)이란 개발금융의 투입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즉, 개발금융 투입을 통해 i) 추가적인 민간재원이 조달되었는지, ii)개발금융 투입이 없는 경우 보다 개발파급효과가 크도록 사업디자인과 정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iii)추후 민간이 단독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창출되었는지 등을 의미한다.

71) AFD 홈페이지 참고(<http://www.afd.fr/lang/en>, 검색일: 2014. 5. 29).

###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은 지속가능성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재원보다 더 큰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형연구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이 상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72)</sup> 지난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새롭게 설립하여 기후재원 조성과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현재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15억 달러이다(표 4-7 참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큰 국가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다. DAC 회원국 총 ODA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12년 평균 약 16%이다. 같은 기간 기후변화 관련 지원의 58%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에 지원된 반면,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지원된 비중은 18%이다.

---

72) UNFCCC(1992), Article 4.7.

표 4-7.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후변화 완화 관련 원조		기후변화 적응 관련 원조		완화 및 적응 관련 원조 (e)	총 기후변화 관련 원조 (a+b+c+d-e)
	주요 목적 (a)	부수적 목적(b)	주요 목적 (c)	부수적 목적 (d)		
호주	152.4	220.7	163.1	398.7	313.7	621.2
오스트리아	9.5	5.5	4.5	7.5	2.9	24.1
벨기에	6.6	62.9	5.5	82.5	41.4	248.7
캐나다	310.2	71.4	342.4	181.7	337.1	568.6
체코	1.0	0.9	1.1	3.0	0.4	5.6
덴마크	83.4	167.1	69.9	252.8	210.5	362.6
유럽연합	280.8	1,594.0	387.8	1,331.1	1,218.5	2,375.3
핀란드	8.4	52.8	16.5	95.4	46.8	126.4
프랑스	2,570.2	654.5	500.2	118.3	137.6	3,705.7
독일	1,436.7	1,077.7	199.6	1,355.5	577.7	3,491.7
그리스	0.0	0.4	0.0	0.4	0.4	0.4
아이슬란드	3.6	0.9	0.8	6.0	3.8	7.6
아일랜드	-	7.2	20.4	70.4	7.2	90.8
이탈리아	18.3	59.6	17.6	55.0	65.5	85.0
일본	4,349.7	136.2	241.2	2,237.9	388.9	6,576.2
한국	31.6	11.2	43.1	120.2	36.8	169.2
룩셈부르크	1.6	11.6	0.9	22.0	11.3	24.8
네덜란드	88.0	101.6	214.7	150.5	113.7	441.1
뉴질랜드	0.6	12.5	4.5	4.3	2.7	19.2
노르웨이	457.3	265.3	45.3	211.2	114.5	864.6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18.6	0.6	0.0	0.3	0.2	19.3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9.2	80.4	28.7	160.4	68.0	210.7
스웨덴	120.9	317.8	173.9	327.0	352.7	586.9
스위스	50.7	130.3	72.1	205.5	54.7	403.8
영국	455.6	44.7	130.2	23.3	55.9	597.9
미국	N/K	N/K	N/K	N/K	N/K	N/K
DAC 총합	10,464.9	5,087.9	2,684.0	7,420.9	4,163.0	21,491.0

주: 2012년 기준.

자료: OECD DAC(2014a), Table 1, p. 3.

한편 기후변화 관련 다자기금과 주요국의 이니셔티브 현황은 [표 4-8]과 같다. 규모가 가장 큰 기금은 세계은행이 수탁관리하는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Fund)으로 약정액 기준 52억 달러에 이른다. 다자기금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140억 달러로,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를 더해도 기후재원 조성 목표인 1,00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

표 4-8. 기후변화 관련 다자기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금명	약정액 (a)	지출액 (b)	집행률 (a/b*100)
Adaptation Fund	226.3	92.3	40.8%
Amazon Fund	1,033.5	97.7	9.5%
Clean Technology Fund (CTF)	5,242.0	426.5	8.1%
Congo Basin Forest Fund	186.0	53.0	28.5%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Carbon Fund	388.4	0.4	0.1%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Readiness Fund	355.1	39.3	11.1%
Forest Investment Program	599.0	5.1	0.9%
GEF Trust Fund (GEF 47)	753.7	933.1	123.8%
GEF Trust Fund (GEF 57)	1,350.0	278.6	20.6%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GCCA)	385.4	142.8	37.1%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69.5	-	-
Green Climate Fund (GCF)	54.9	-	0%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	907.0	133.2	14.7%
MDG Achievement Fund	89.5	89.5	100.0%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1,160.0	40.8	3.5%
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521.0	3.6	0.7%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	344.3	216.4	62.8%
UN-REDD	248.8	181.6	73.0%
<b>다자기금 합계</b>	<b>14,014.5</b>		
<b>주요국 이니셔티브</b>			
호주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189.6	31.7	16.7%
독일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1,081.8	-	-
인도네시아 Climate Change Trust Fund	21.0	5.0	23.9%
일본 Fast Start Finance	15,000.0	-	-
노르웨이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1,607.8	283.8	17.6%
영국 International Climate Fund	6,002.0	-	-

주: 주요국 이니셔티브는 각국의 ODA 규모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다자기금에 대한 기여 금액은 각국의 다자원조에 보고됨.

자료: [www.climatefundsupdate.org/data](http://www.climatefundsupdate.org/data)(accessed on 2014. 9. 3).

치는 상황이다. 집행률을 계산해본 결과, GEF 4기와 MDG Achievement Fund, SCCF, UN-REDD 기금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50% 미만인데, 이는 기후재원의 조성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과제임을 의미한다. 즉, 제2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연간 최소 1,800억 달러,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적응 비용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개도국의 재원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성된 재원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표 4-8]에 제시된 것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다자기금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010년 신설된 GCF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GCF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의 운영주체(operating entity)로 지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협약에 명시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의무 조항에 따라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 타 기금들과 달리 선진국은 협약 이행의 차원에서 GCF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GCF 이전에도 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금들이 존재한다. 최빈개도국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인데, 각각 9억 달러, 3억 4천만 달러, 2억 3천만 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다.<sup>73)</sup>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중복과 일관성 문제를 야기하는바, 신설된 GCF가 향후 기후재원 구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은 다자기구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value for money)에 따라 지원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GCF의 차별성과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주장해왔다. GCF 이사회는 2014년 5월 회의에서 기금 운영체계에 합의함에 따라 GCF 초기 재원

---

73) 개별 기금의 설립 배경과 현황은 정지원 외(2013, pp. 24~28)를 참고할 것.

조성 논의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9월에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GCF에 대한 기여 공약을 발표한 상태로 협상 진전과 GCF의 본격적 운영 개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9. 주요 국가 및 기관의 기후재원 공약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억 달러 규모 자산의 탈탄소화</li> <li>• 5,000억 달러 규모 자산의 탄소발자국 측정 및 공시</li> </ul>
3대 연기금	2020년까지 저탄소 사업에 310억 달러 투자
상업은행	녹색채권 등을 발행하여 2015년 말까지 300억 달러 조달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lub(회원: 개발은행)	2015년 말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사업 운영
보험업계	2015년 말까지 녹색투자 규모를 2배 증가하여 820억 달러로 확대
GCF에 대한 주요국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1억 달러(기존 5천만 달러에 추가)</li> <li>• 독일 10억 달러</li> <li>• 프랑스 10억 달러</li> <li>• 스위스 1억 달러</li> <li>• 덴마크 7천만 달러</li> <li>• 멕시코 1천만 달러</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15년 동안 25억 달러 개도국 지원</li> <li>• 2020년까지 총 180억 달러 지원</li> </ul>

주: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UN Climate Summit에서 각 기관 및 국가의 공식 발언문의 내용을 정리.  
 자료: UN 홈페이지(검색일: 2014. 10. 6).

##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칸쿤 당사국총회 합의문은 기후재원은 ‘새롭고 추가적(new and additional)’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두 문서 모두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Post-2015 논의와 함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개도국의 기본 입장은 기후

재원은 ODA에 추가적인 재원이라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ODA 규모는 현재 DAC 회원국의 평균 ODA(ODA/GNI 0.3%)에서 1970년대에 수립된 0.7%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기후재원이 새롭고 추가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ODA 통계와는 별도로 기후재원 통계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공여국 내에서 개발 관련 지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으로 지원 대상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공여국 정부의 ODA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지원되었다면 새로운 재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ODA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예산 전용(diversion)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국가의 ODA 예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선진국 정부의 예산 배분 관련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용 여부는 파악이 어렵다. 재원의 추가성에 관한 질문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정 개발사업에서 기후변화 요소와 개발 요소를 분명히 구별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의 감축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개발 연관성이 낮을 수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인지 개발 인프라 구축인지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다.

기후재원 흐름 추적은 OECD DAC의 리우마커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리우마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sup>74)</sup> 개도국은 협약의 의무 이행 현황을 협약 외부의 체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드러

---

7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2012, pp. 34~39)를 참고.

내지만 새로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DAC의 리우마커는 개별 ODA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고려하는지를 질문한다.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총합이다(표 4-7 참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가 CRS 목적코드로 구분되는 분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여국이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해 리우마커를 적용한다. 따라서 리우마커는 단순히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지원 증가 및 감소 추세보다는 공여국의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주류화(mainstreaming)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14년 개발협력보고서에서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지원이 2004~06년 14%에서 2010~12년 24%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ODA의 ‘녹색화(greening)’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개발협력에서 주류화, 즉 핵심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sup>75)</sup>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개발재원에서 기후변화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은 [그림 3-9]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교차하는 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발재원과 달리 기후재원은 달성해야 할 양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 기후재원의 장기 조달 목표인 연간 1,000억 달러는 DAC 회원국의 연간 ODA 규모에 거의 다다른다는 점에서 결국 기후재원은 ODA만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며,

---

75) OECD DAC(2014b), p. 207.

민간재원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 칸쿤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해야 할 기후재원의 출처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을 포함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때 설립된 GCF 역시 민간 부문 전담조직(PSF: Private Sector Facility)을 별도로 두고 있다. 향후 쟁점은 민간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와 민간재원 흐름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로 전망된다.

##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최근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재원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민간 부문의 투자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금융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는 공공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 경험 사례 분석을 OECD에 의뢰하였다. OECD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제출 당시 진행 중인 두 가지 연구가 소개되었는데,<sup>76)</sup> 재생에너지 부문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에 관한 것과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을 OECD 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보는 연구이다.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생에너지 연구는 공공재원은 경제성이 없어 민간투자가 어려운 사업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근거로 메가와트당 설치비용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협조용

---

76) OECD(2014b).

자로 제공된 경우 민간투자 100% 사업보다 27%가량 높다는 점을 들었다. OECD 국가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장기투자 촉진, 위험 완화, 역량 보완 등 공공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있는 미래 저탄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CF는 PSF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차액 지원 및 보증, 기존 발전시설의 저탄소화를 위한 지원, 국가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 탄소가격 보증, 기후위험보험 개발지원, 최빈개도국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을 위한 미소금융,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활용한 투자자 모집 등이다.<sup>77)</sup> 정지원 외(2013)는 GCF PSF는 세계은행그룹의 IFC와 MIGA, 독일 KfW의 DEG, 프랑스 PROPARCO 등과 같은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4-10]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금융기관의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활발한데, 독일은 KfW 개발은행과 DEG, 환경부가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국의 경우 DFID,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세 기관이 국제기후기금(International Climate Fund)을 설립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데 민간 부문 지원은 핵심 분야이다. 증여, 양허성 차관, 저리차관, 출자, 메자닌 금융, 보증 등 이들 프로그램의 협력수단은 다양하다. 스위스는 5백만 달러 규모의 녹색신용신탁기금(Green Credit Trust Fund)을 설립하고, 청정생산기술을 보유한 베트남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77) GCF Secretariat(2013), pp. 6~9.

표 4-10. 기후변화 관련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금융기관 프로그램

	규 모	주요 사업
양자 기관		
독일 DEG	지원금액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케냐 Olkaria III 지열발전소 건설사업: 총 사업규모 1억 500만 달러 중 4천만 달러 부담</li> </ul>
독일 KfW Development and Climate finance	지원금액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로코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차관</li> <li>우크라이나 지역 은행 지원 사업: 신용공여(credit line)</li> <li>Green for Growth Fund(4억 유로),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5억 유로)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 지원</li> </ul>
독일 환경부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연간 1억 2천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차보전차관 제공</li> <li>러시아 및 CIS 국가 CDM/JI 프로젝트 지원사업</li> </ul>
영국 International Climate Fund	39억 파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태양열 발전 보증 사업: ADB가 제공하는 보증비용 일부 부담(6백만 파운드). 이를 통해 2억 6,500만 파운드 규모의 민간자금 조달 예상</li> <li>CP3(Climate Public Private Partnership) 기금과 IFC Catalyst Fund에 각각 6천만 파운드, 5천만 파운드 출자. 이를 통해 59억 파운드 규모의 민간자금 조달 효과</li> </ul>
네덜란드 FMO Entrepreneurial Bank	630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ccess to Energy Fu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관리</li> <li>인도 Reliance Power사의 100MW 태양광발전사업: 총 사업규모 4억 2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 선순위 대출, 1,500만 달러 메자닌 금융 제공</li> </ul>
노르웨이 NorFund	13억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분야 민간기업 지원</li> <li>5~10년 중장기 출자 및 대출</li> </ul>
베트남 Green Credit Trust Fund	5백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여국: 스위스(SECO)</li> <li>청정생산기술을 보유한 베트남 SME에 중장기 투자</li> </ul>
다자 기금		
Clean Technology Fund(CTF)	55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여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li> <li>MDB 전문성에 기반을 둔 민간자금 조달 촉진</li> <li>지원대상: 중소국가의 발전, 수송 부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li> </ul>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	2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업은행 지원 및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li> <li>터키 상업은행인 Sekerbank에 2,500만 선순위 차관 제공: Sekerbank는 터키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지원</li> </ul>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GEEREF)	1억 800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규모의 프로젝트 및 기업 지원</li> <li>지역기금 지원: Renewable Energy Asia Fund(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 Evolution One Fund(남아프리카 지역의 청정기술 투자)</li> </ul>

표 4-10. 계속

	규모	주요 사업
Interact Climate Change Facility	4억 유로	에너지 부문 장기투자 촉진 사업규모의 75%까지 지원(최대 4,500만 유로) Shareholder: EDFI(영국 CDC, 독일 DEG, 네덜란드 FMO, 노르웨이 Norfund, 프랑스 PROPARCO 등이 참여) 몽골 Clean Energy사의 Salkhit Wind Farm 지원사업 ICCF에 2,200만 달러 출자
중남미개발은행(IDB)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6억 달러	개도국 벤처캐피탈 및 소규모 민간금융기관 지원 CAREC, CleanTech Fund, EcoEnterprises Fund 지원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for Low-Income Countries(SREP)	3억 1,800만 달러	저소득국(IDA)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지원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케냐, 몰디브, 말리, 네팔에서 파일럿 사업 준비 중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1,500만 달러	1999년 설립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개도국 정부 기술지원: PPP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발 공여국: WB, ADB를 포함, 총 17개 국가 및 기관 요르단 자발적 감축 이행을 위한 PPP 전략 수립사업(10만 달러)
UNEP Renewable Energy Enterprise Development (REED)	프로젝트당 최대 25만 달러 제공	재생에너지 사업기회 발굴 및 청정에너지기업의 초기자금 제공 지원

자료: World Bank-UNDP Climate Finance Options(www.climatefinanceoptions.org)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4. 10. 7).

다자 이니셔티브 중에서는 청정기술기금(CTF: Clean Technology Fund)이 대표적이다. CTF는 현재 기금규모가 55억 달러로, 발전 및 수송,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 기금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지역개발은행이 운영 관리하는데, MDB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의 37%가 민간 부문에 제공되었다. 멕시코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총 사업자금의 78%를 민간 부문으로부터 조달한 CTF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sup>78)</sup> CTF 사업의 민간자금 조달 현황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는 1999년에 설립된 기금으로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개도국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PPP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발을 지원해왔다. 요르단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PPP 전략 수립을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민간재원 흐름 추적 논의는 개발협력 커뮤니티보다 활발하다. 이는 기후재원의 수량적 목표가 수립된 상황에서 목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며, 공공재원의 경우 DAC 리우마커를 활용, 추적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민간 기후재원은 체계화된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후재원의 정의를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관련, OECD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World Resource Institute와 함께 공공개입의 민간재원 촉진방안에 관한 종합연구를 2015년에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서 올해는 공공재원이 ‘조달한(mobilized)’ 민간재원 추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기존 논의는 자금 조달비율(leverage ratio) 계산을 통한 공공재원의 촉매적(catalytic)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으나 자금 조달비율을 발표하는 기관별로 가정이 상이하고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원수단 또는 자금 동원방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조달된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기후재원 조성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DAC의 ODA 정의 현대화 및 총 TOSD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재원 추정 방법론 연구의 논리적 구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

78) CIF(2013), p. 7.

한다.<sup>79)</sup> 첫째, 주요 개념의 정의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활동의 범위, 공공 및 민간 재원의 정의, 선진국과 개도국 분류, 재원의 지역별 출처 결정 방식이 포함된다. 둘째, 민간재원 조달을 위해 활용된 공공개입의 유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수단의 유형들을 결정한다. 셋째, 공공개입의 정량적 수준과 민간재원의 총량을 측정한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은 개입의 정량적 수준을 측정하는 시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경계, 환율, 저탄소 및 기후 관련 민간재원 데이터 수집 한계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원으로 조달된 민간재원을 추정하게 되는데, 공공개입과 민간재원 조달의 요인 분석이 핵심이다.

---

79) OECD Workshop(2014. 9. 15) 비공개 보고서(Research Collaborative on Tracking Private Climate Finance).

##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자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자원 조성 현황 및 평가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1. 개발자원 조성 현황 및 평가

## 가. 개발자원의 구성

우리나라의 ODA, OOF, 민간자원을 모두 포함한 개발자원 규모는 2003년 약 22억 달러에서 2012년 약 124억 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되었다. DAC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개발자원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증가율을 보면 DAC 회원국의 개발자원이 2003년 약 1,400억 달러에서 2012년 약 5,000억 달러로 3.5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개발자원 구성요소의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OOF와 민간자원은 2009년 크게 감소

표 5-1. 우리나라 개발자원 유형별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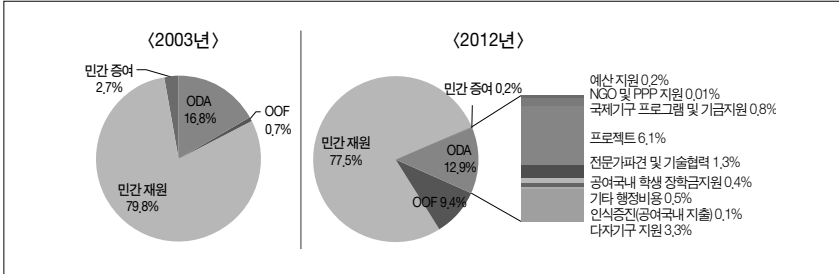
	자금 출처	공적 자금		민간자금		비 고
	계	ODA	OOF	민간재원 (FDI, 수출신용)	민간증여	ODA /개발자원 비중
2003	2,181.5	365.9	16.0	1,740.2	59.4	16.8
2004	3,153.0	423.3	297.3	2,368.8	63.5	13.4
2005	4,909.9	752.3	720.8	3,325.9	110.8	15.3
2006	6,514.2	455.3	1,023.4	4,934.3	101.3	7.0
2007	11,581.9	696.1	1,005.3	9,826.9	53.7	6.0
2008	10,700.1	802.3	1,903.0	7,863.4	131.4	7.5
2009	6,442.3	816.0	452.3	5,018.0	155.9	12.7
2010	11,834.1	1,173.8	1,894.8	8,716.3	49.2	9.9
2011	11,508.7	1,324.6	2,237.8	7,771.5	174.8	11.5
2012	12,414.9	1,597.5	1,171.4	9,615.9	30.2	12.9

주: 순지출, 경상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5).

그림 5-1. 우리나라 개발재원 유형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순지출, 경상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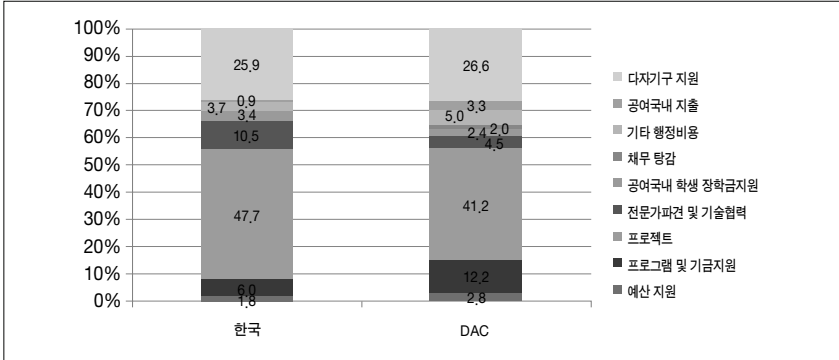
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변동폭이 큰 편이다(표 5-1).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개발재원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약 80%에서 2012년 78%로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OOF는 0.7%에서 9.4%로 약 8.7%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ODA는 3.9%포인트 감소하였다(그림 5-1 참고).

[그림 5-1]에 나타나 있듯이 2012년 기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제공한 개발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민간재원으로 약 77.5%를 차지하였으며, ODA는 전체 개발재원 중 12.9% 정도를 차지하였다. DAC 회원국 전체 개발재원의 약 30%가 ODA이고, 민간증여도 6%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ODA(12.9%)와 민간증여(0.2%)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DAC 회원국의 민간재원(62%) 및 OOF(2%)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재원 77.5%, OOF 9.4%로 그 비중이 DAC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해 우리나라는 공적 수출신용 제공이 활발하고, 제조업의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FDI 투자 확대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3. ODA 유형별 지원 비중

(단위: %)



주: 2012년 순지출, 경상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5).

지원금 등 공여국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집중된(focused) ODA 측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집중된 ODA 측정방식이 적용 되었을 때, 2012년도 ODA 규모는 6,902만 달러가 감소한다(국내 유학생 장학금 및 연수 지원금 5,431만 달러, 인지제고 1,471만 달러).

DAC 회원국의 경우 전체 ODA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 형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자간 프로젝트(약 618억 달러, 전체 ODA 중 41.2%)이고, 그 다음이 다자기구 지원(약 399억 달러, 26.6%), 국제기구/NGO 등에 대한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약 183억 달러, 12.2%) 순이다. 형태별 지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이나 기금 공동지원 비중(6.0%)이 DAC 회원국 전체(12.2%)에 비해 절반가량 낮은 수준이다. 예산지원(1.8%)도 DAC(2.8%)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반대로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방식(10.5%)이 DAC(4.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DAC 회원국이 2%가량 지원한 채무탕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여국 내 지출 비용과 관련, 우리나라는 대체로 개발 인지제고 목적으로 활용한 데 비해 DAC 회원국들은 난민지원금으로 더욱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구에 대한 ODA를 제외한 양자 ODA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와 양허성 차관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와 양허성 차관의 지원 비율이 약 51 대 49로 유지되고 있다.<sup>80)</sup> DAC 회원국 중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는 [표 5-2]와 같이 EU를 제외하고 총 9개 국가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양자 ODA 중 차관을 지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양자간 차관 지원 조건은 평균적으로 상환기간 약 40년, 거치기간 12년, 이자율 0.1%로 증여율이 87.9%에 달해 차관을 공여하는 주요 DAC 회원국 평균(64.2%)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 포르투갈과 같이 차관 비중이 40% 수준을 넘어 다른 선진 공여국에 비해 차관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원 조건에 있어 재무적으로 양허율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재 양허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할인율 수준과 증여등가액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증여율 산출에 적용되는 할인율(10%)이 공여국의 낮은 이자율보다 크게 높아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DAC에서는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DDR) 또는 IMF(5%)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할인율 수준을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할인율을 5%로 낮춰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

---

80)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p. 4.

율을 계산한 결과 68.4%로, ODA 적격기준선인 25%는 여전히 충족한다 (표 5-2 참고).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은 할인율을 5%로 낮출 경우 기준

표 5-2. 공여국의 차관지원 조건\* 비교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DAC 전체	
전체 ODA 중 차관 비중(%)		0.8	1.9	39.9	20.6	7.3	48.0	48.4	14.0	44.3	11.1	
양자간 차관 지원 조건	평균 상환기간 (년)	35.7	30.5	19.4	15.9	33.5	32.6	40.2	-	27.9	26.8	
	평균 거치기간 (년)	5.7	10.5	5.6	5.1	24.3	9.5	12.3	-	11.2	8.1	
	평균 이자율(%)	0.0	0.0	2.7	2.2	0.0	0.8	0.1	-	2.1	1.5	
	증여율 (G.E.) (%)	DAC 방식	80.6	83.3	47.9	45.6	91.6	75.9	87.9	-	65.1	64.2
		IMF 방식	60.1	61.5	20.1	21.4	73.7	51.7	68.4	-	35.3	-
DDR 방식		66.4	58.7	15.7	15.6	70.6	30.5	73.8	-	30.7	-	
최저 증여율의 양자간 차관 지원 조건	평균 상환기간 (년)	35.7	30.0	15.0	7.0	24.5	15.0	25.9	-	25.0	22.6	
	평균 거치기간 (년)	5.7	10.0	2.5	2.5	16.0	5.0	10.9	-	16.0	10.3	
	평균 이자율(%)	0.0	0.0	5.2	2.9	0.0	0.6	0.1	-	3.3	0.9	
	증여율 (G.E.) (%)	80.6	82.5	25.0	25.5	85.0	56.2	80.2	-	57.3	68.0	
	양허성 수준**	72.6	63.8	- 0.3	1.9	64.4	21.1	59.8	-	27.5	-	
50% 증여율 이하의 차관 규모 (백만 달러)		-	-	3,489	2,868	-	-	-	-	-	6,357	

주: 2012년 약정액 기준, 차관 지원국 중 EU는 제외함.

\* 차관 규모에서 채무재조정(debt reorganization) 제외. 지분(equity)은 100% 증여율로 간주하되 차관에서 제외함.

\*\* 양허성 수준은 IMF의 양허성 계산방식을 따라 측정함.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22 Other terms parameters for loan-giving DAC members(<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10. 29); OECD DAC(2014h), p. 1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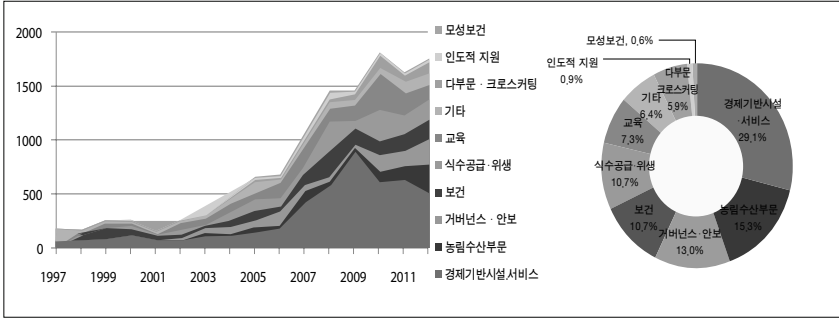
제공되던 차관의 증여율은 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다.

최근 정부는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발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도입을 추진 중인데,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기반 확충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양허성 수준을 낮춰 원조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질적 수준은 개발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금융을 도입하여 혼합금융, 복합금융을 통해 중소득국 중심의 ODA가 확대된다면 원조배분의 안정성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요소이다. 몬테레이 합의와 같이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GNI의 0.15~0.2%를 최빈국에 지원하기로 설정한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은 양허율 수준을 현격히 낮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조의 질적 조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타이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개발금융은 기본적으로 언타이드 조건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업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발금융이 지원조건 측면에서 양허성 차관과 상업금융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때 개도국 사업의 위험을 민간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분야별 ODA 지원 비중으로는 경제기반시설·서비스 분야가 29.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 부문(15.3%), 거버넌스 및 안보(13%), 보건(10.7%), 식수공급·위생(10.7%), 교육(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DAC 회원국의 경우 2012년 기준 경제기반시설·서비스

그림 5-4. 우리나라 양자 ODA의 분야별 지원 추이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비중은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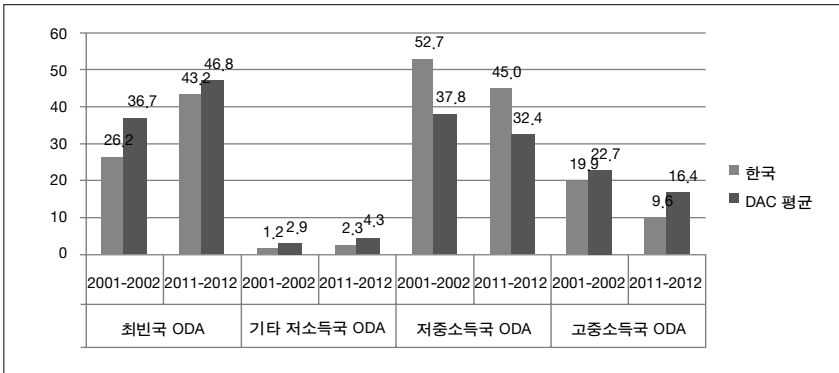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10. 30) Aid by sector and donor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7%, 기타 부문 19.9%(예, 물자원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산업 지원 등), 다부문·크로스커팅 분야 10.4%, 거버넌스 및 안보 10.4%, 인도적 지원 7.2%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해 다부문·크로스커팅 분야나 인도적 지원 비중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경, 무역 등 주류화 이슈로 다루어지는 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규모는 2012년 기준 전체 ODA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여 전 세계 AfT/ODA 비중(30% 내외)보다 높게 나타났다. AfT는 개도국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 정책 및 규제, 경제기반시설, 생산역량 구축, 무역 관련 조정의 네 가지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에너지 등 경제기반시설 분야에 2012년 기준 약 62%를 지원하였다.<sup>81)</sup> DAC의 정책마커로 계산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원조는 양자 ODA의 6%를 차지한다.

81) 유에라, 정지선(2014), p. 9.

그림 5-5. 소득수준별 ODA 지원 비중



주: 지역 단위로 지원되어 국가별 지원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 통계에서 제외.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26, Distribution of ODA by income group(<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10.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소득수준별로는 2011~12년 평균 저중소득국(LMIC)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도 43.2%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고중소득국(UMIC)과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각각 9.6%와 2.3%로 낮았다. DAC 회원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저중소득국(LMIC)에 대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빈국 및 고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편이다. 단, 2001~02년에 비해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17%포인트로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5-5 참고).

기타공적재원(OOF)의 성격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대부분 투자 관련 재원의 흐름이며, 수출신용은 2012년 기준 전체 OOF의 16%이다. 참고로 비양허성 개발차관(non-concessional loans) 제공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재원 유형 중 민간증여 활용 수준은 0.2%로 매우 낮았다. [표 5-4]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으로 유입된 민간

표 5-3. 우리나라 기타공적자원(OOF) 유형별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계	수출 관련			투자 관련			개발 차관*
		소 계	수출 신용	국내 기업 지원	소 계	개도국 지원	국내 투자자	
2003	15,99	-265.69	-30.63	-235.06	281.69	257	24.69	-
2004	297.33	45.65	299.16	-253.51	251.69	118.31	133.38	-
2005	720.81	433.71	358.25	75.46	287.1	215.58	71.52	-
2006	1,023.4	288.33	289.92	-1.59	735.07	451.17	283.9	-
2007	1,005.29	537.07	602.09	-65.01	468.21	516.26	-48.04	-
2008	1,902.97	311.08	311.58	-0.5	1,591.89	1,173.17	418.72	-
2009	452.34	-107.09	-107.25	0.16	559.43	5,47.69	11.74	-
2010	1,894.77	47.59	50.9	-3.31	1,847.18	989.82	857.35	-
2011	2,237.76	50.38	50.38	-	2,187.39	1,615.56	571.82	-
2012	1,171.37	110.58	184.33	-73.75	1,060.79	858.7	202.09	-

주: 비양허성 개발차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15).

표 5-4. 우리나라와 DAC 회원국 평균 민간증여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민간증여	101	54	131	156	49	175	30
	개발재원	6,514	11,582	10,700	6,442	11,834	11,509	12,415
	비중 (%)	<b>1.56</b>	<b>0.46</b>	<b>1.23</b>	<b>2.42</b>	<b>0.42</b>	<b>1.52</b>	<b>0.24</b>
DAC	민간증여	312,450	436,404	276,542	334,360	510,106	501,836	474,267
	개발재원	14,749	18,352	23,787	22,048	30,775	31,969	29,753
	비중 (%)	<b>4.72</b>	<b>4.21</b>	<b>8.60</b>	<b>6.59</b>	<b>6.03</b>	<b>6.37</b>	<b>6.27</b>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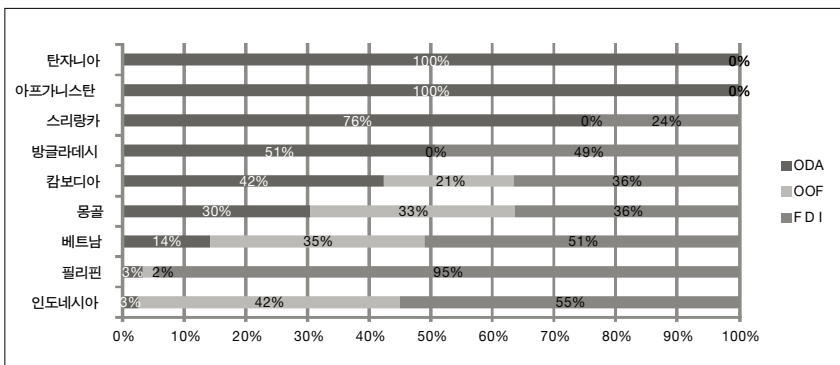
증여규모는 연도별 편차가 크다. DAC 회원국 전체 민간증여 중 우리나라의 지원 비중은 0.1% 수준이었다. DAC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전체 개발재원 중 약 6.2%를 민간 증여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기준).

공적자금이나 민간재원 이외에 민간증여 채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DAC 회원국 전체 민간증여의 74%를 지원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개발재원으로의 민간증여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최근 2012년 우리나라의 ODA 상위 수원국을 중심으로 유입된 개발재원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베트남의 경우 2012년 ODA 지출액이 2억 760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ODA 최대 수원국이지만 기타 공적재원 5억 650만 달러, FDI 7억 4,5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전체 개발재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베트남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패턴이 더욱 강해 ODA가 전체 개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그친다. 이

그림 5-6. 우리나라 ODA 상위 수원국 개발재원 유형별 비중



주: ODA는 2012년 총 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8).

에 반해 최빈개도국 그룹에 속하는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은 개발재원 중 ODA 외의 재원은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저중소득국(LMIC) 그룹이지만 아직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스리랑카의 경우 개발재원 대비 ODA 비중이 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등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의 경우 국가별로 개발재원 유형별 구성이 차이가 많아 다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ODA 최대 수원국이지만 최근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공여국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공공-민간재원의 연계, 지원 방식의 다원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양허성이 높은 차관을 제공하되 중소득국 이상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개발재원 조달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5-5. 우리나라 ODA 상위 수원국 개발재원 유형별 규모

(단위: 백만 달러)

	ODA			OOF	FDI	ODA 비중	중점협력국 여부	소득 그룹
	증여	차관	합계					
베트남	33,9	173,7	207,6	506,5	745	14%	O	LMIC
아프가니스탄	78,5	0,0	78,5	0,0	0	100%	x	LDC
캄보디아	35,5	22,6	58,1	28,9	50	42%	O	LDC
스리랑카	9,9	47,4	57,3	0,0	18	76%	O	LMIC
탄자니아	13,2	37,5	50,7	0,0	0	100%	x	LDC
방글라데시	10,5	38,0	48,5	0,0	47	51%	O	LDC
인도네시아	23,2	21,3	44,5	743,0	964	3%	O	LMIC
몽골	34,4	0,0	34,4	37,4	41	30%	O	LMIC
필리핀	29,1	4,0	33,1	20,9	935	3%	O	LMIC

주: ODA는 2012년 총 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4. 9. 8).

##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빈곤해소를 넘어 개발된 상태의 지속가능성, 즉 지속가능발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역시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2000년에 채택된 MDG의 일부 목표는 2015년 시한을 앞둔 상태에서 여전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운 목표인 SDG 도입은 개발재원의 공급 관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십여 년 전에 비해 재원의 제공 주체 및 출처, 지원방식의 다양성이 가시적임에 따라 그 의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ODA를 비롯한 주요 개발재원의 통계를 수집 분석하는 DAC 역시 2015년 회원국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ODA 개념의 현대화와 새로운 지표인 TOSD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 차원의 논의는 단순히 통계 수집의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DA 현대화 논의는 ODA 통계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그동안 회원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요구됐던 ODA의 양허적 성격에 대한 정량적 정의를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OD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관의 증여율이 최소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증여율 계산 시 사용되는 할인을 이 현재 낮은 금리와는 괴리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 흐름과 지원 유형에 집중하는 현 시스템은 공여국의 노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양허성 기준에 따라 ODA와

OOF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ODA는 물론 OOF의 경우에도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면, 이를 공여국의 노력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발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성격 및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개발재원 동원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수단(출자 및 차관, 보증)들이 ODA로 적절히 계상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sup>82)</sup> 이 제안에서 영국은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공여국 정부의 지원을 ODA로 계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국제금융기구(IFIs)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을 ODA로 계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해당 기구의 지원이 어떤 수단으로 제공되었는지보다는 공여국의 기여를 고려하자는 의미이다. 영국은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ODA 공여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여국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DAC에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으나 개발재원의 조성 및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들 국가의 개발금융 운용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TOSD 지표의 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ODA와 그 지원수단 논의(증여와 양허성 차관의 비중)에 집중하는 것은 현 상황과 거리가 있다. ODA 확대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적지원 전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

82) OECD DAC(2014j).

ODA를 비롯한 공적지원의 확대는 민간재원 동원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간재원의 중요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ODA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강조된 것이 사실이나

표 5-6.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개입 유형

구분	개입 유형	지원 수단	예시
금융 수단	증여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	- 기술협력, 역량개발 - 이자 지원
	채무	- 차관 - 신용대출(credit lines) - 채권 - 메자닌 금융	- 신디케이트론 - 수출신용 - 프로젝트 채권, 녹색채권 - 부채스와프
	출자	- 지분출자, 부분출자 - 메자닌 금융	- Fund of funds에 지분출자 - 우선순위 지분출자
	위험완화	- 보험 - 보증 - derivative	- monoline 보험 - 차관 및 출자 보증 - 정치·규제·일반 신용·수출신용 위험 보증 - 각종 스와프(이자율, 환율, 신용디폴트) - structured products including asset backed securities - weather-indexed derivatives
정책 수단	규제	- 법, 정책 - 계획 및 목표 - 기준 - 쿼터	- 에너지효율 기준 - 시장창출(예: CDM 도입) -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 - feed-in-tariffs - 선시장 공약 - 재생에너지 인증성 - 토지사용계획 - 무역정책 및 환경상품, 서비스 규정
	재정 정책	- 세금 - 보조금 및 조세혜택 - 시장지원	- 환경세 - 저탄소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보 및 혁신	- 연구 및 개발 - 라이선스 및 patent - 기술이전 - 교육 및 인식제고 - 데이터 및 통계	- 양자적 기술이전 협정 - 기술센터 설립 - labelling

자료: Jachnik, Caruso, and Srivastava(2014), p. 26.

민간 부문의 동참 없이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재원이 ODA 목표를 경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SDG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을 인식해야 한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개입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표 5-6 참고). 한편 민간재원 동원에 있어 수원국의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표 5-6]의 정책수단을 수원국이 도입할 수 있도록 ODA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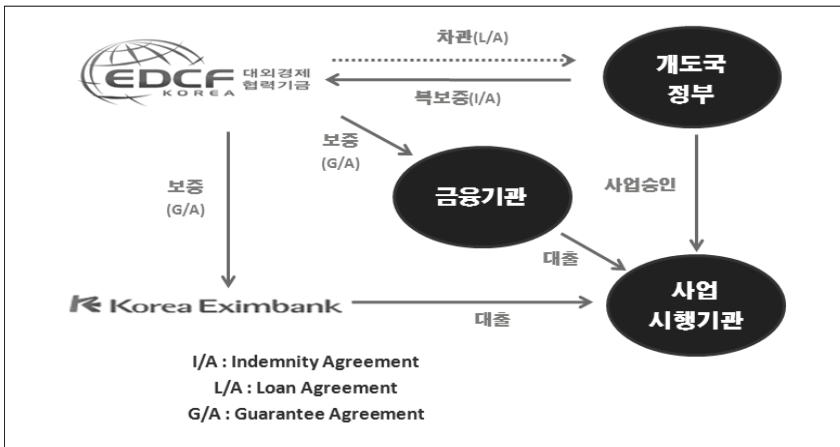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개발재원 마련에 관한 기본전략 부재로 개발재원 확대 논의는 EDCF의 구축성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 참여 확대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개발재원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공적자금 및 민간자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재정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ODA 양허성 재정립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발재원의 효율적 조달방식으로 PPP를 통한 개발재원 마련 방식이 부상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PPP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정부와 민간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하고, 사업 추진 시 실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개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부발주사업이 크게 증대하고, 교통, 통신, 전력, 수자원 등 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수요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정부예산에 기반을 둔 차관 이외에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비구속성 원조를 표방하면서도 양허성·비양허성 차관, 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사용하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도국의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 정부가 사업시행기관(SPC: special purpose company)에 제공하는 출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EDCF로 지원하거나 해당 SPC에 직접 출자 또는 대출을 제공하고, 이러한 민자사업차관을 통해 민자사업에 부수되는 재정사업을 지원(개발사업차관)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을 EDCF로 지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는 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신용도가 낮아 금융조달

그림 5-7. EDCF 보증제도



주: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신용도가 낮아 금융조달이 어려운 경우 EDCF가 이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제공.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EDCF 개발금융 지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2014. 4. 16).

이 어려운 경우 EDCF가 이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원국의 복보증이 필요하고, 연간 2억 달러 범위 이내로 개별 보증한도는 1억 달러이다. 네팔 수력발전사업과 같이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O&M(operation and management) 등 사업 전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추진 중이고, 복합금융을 통해 EDCF 차관과 수출금융 및 보증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자사업차관은 개도국의 성장기반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과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은 EDCF 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국제기구·개도국 정부 발주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고, 최근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도국에도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PPP 사업 발굴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 차관제도는 개도국 정부의 복보증이 필요하고, 개도국 현지의 BOT 제도 미비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민자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리스크, 금융리스크, 개도국 현지의 토지수용 및 이주 문제, 환경평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에 최적의 리스크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원국, 민간 부문, 원조기관의 파트너십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에 필요한 개발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민간자금을 통한 대형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EDCF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함께 활용하여 양허성 차관과 시장성 차관,

보증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발금융 대상사업은 대규모 비구속성 사업으로 기존 EDCF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비해 대폭적인 발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도국 민간 부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현지법인·금융기관에 EDCF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개도국 중소기업, 지방금융기관 등에 대한 직접 대출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JICA는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과거 10여 년 동안 지원을 중단하였던 민간부문투자금융(PSIF: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을 본격 재개한 바 있다.<sup>83)</sup> PSIF는 개도국의 경제개발 관련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설립된 SPC를 대상으로 융자 및 지분투자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이다. 즉 민간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분야에 PSIF를 통해 양허성 차관과 지분투자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재원 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ODA의 지원대상이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면, PSIF는 민간기업인 SPC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원대상 분야는 인프라, MDG 및 빈곤퇴치, 기후변화 등 다양하

---

83) JICA(2013), Annual Report, p. 129 참고. 일본 정부는 2001년 개도국 민간사업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 때문에 2001년 SPC 재점검 및 합리화 계획에서, 2001년 말까지 승인된 사업 외에는 PSIF를 통한 개도국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10년 다시 기존에 추진하였던 PSIF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및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어 JICA는 2011년 1월 ‘새로운 성장전략’에서 2012년 4월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PSIF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명시한 이후 2012년 10월 대상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며 본격적으로 지원을 재개하였다.

표 5-7. 일본 PSIF 차관과 ODA 차관

		PSIF 차관	PSIF 지분	ODA 차관
프로젝트 유형		민간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
지원 수단		차관	지분투자	차관
통화		엔화	현지 통화	엔화(denominated)
지원 조건	금리/ EIRR	기본금리: 국채금리 + 스프레드	- 대상국 무위험변동 할인을 이상	(베트남 경우) - 일반 ODA 차관: 1.4% - 특수조건: 0.2%
	상환 기간/ 출구전략	- 20년	- 출구전략 사전구축	- 30년(일반 ODA 차관) - 40년(특수 예외 경우)
	거치기간	- 5년	적용 안됨	- 10년
	용자한도	총 사업비용 중 70%	총 지분 대비 25%	- 총 사업비용 중 85%
절차		민간기업 요청		수원국 정부 공식요청
채권보전		정부 지급보증 불필요		정부지급보증 혹은 담보

자료: JICA(2012b), pp. 5~8; JICA(2013), p. 129; 2013년 일본 외교부 ODA 온라인 백서([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13/html/honbun/b2/s2\\_5\\_1\\_05.html](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13/html/honbun/b2/s2_5_1_05.html), 검색일 2014. 8. 20).

다.<sup>84)</sup> PSIF는 개도국의 민간 부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JICA의 민간부문협력국이 전담한다. 금융협력의 일환인 PSIF는 단독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인프라 PPP 사업이나 BOP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 정책자문 및 훈련, 연수생 초청 등 다양한 기술협력 수단과 함께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PSIF 차관과 지분투자를 전통적인 ODA 차관과 지원조건을 비

84) 인프라의 경우 교육·보건·농촌전력화·식수·도로 등 빈곤층 지원 관련 사업, 전력·교통·폐기물·상하수도 등 사회경제개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MDG 및 빈곤퇴치 관련으로는 소액금융과 중소기업 금융, 빈곤층 생계개선에 기여하는 BOP 사업이 지원대상이다. 기후변화의 경우 조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빈곤층 생계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한다.

교하면 다음과 같다. PSIF의 차관은 국채금리와 스프레드를 적용하고 상환기간 20년, 거치기간 5년이며 PSIF 지분은 대상국의 무위험이자율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 ODA 차관이 수원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원되고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채권보전을 하는 데 반해 PSIF 차관과 지분은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되고 정부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2012년 재개된 이후 최초로 PSIF를 지원한 사업은 베트남 롱안 환경친화적 산업공단 프로젝트이다.<sup>85)</sup>

우리나라의 경우 상·하수도, 지방전력망 등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나 낮은 사업성, 높은 정치적 위험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개발국의 현지 민간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지원방식을 민간 부문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국의 공식적 요청이 없더라도 민간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재원조달 방식과 운용수단의 정형화에 있어 핵심쟁점은 위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험보중에 있어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 혼합신용이 유용하지만 국내 신용보증이 불완전할 경우 집행기관의 위험관리 능력과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에 채무 문제가 없는 수원국에 대한 사회 및 경제 인프라, 산업 및 환경기술 분야 지원에 주로 활용되는 복합금융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ODA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저금리차관의 경우 개발협력 규모 확대에 유용할 수

---

85) JICA(2012a), pp 5-8; 2013년 일본 외교부 ODA 백서([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13/html/honbun/b2/s2\\_5\\_1\\_05.html](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13/html/honbun/b2/s2_5_1_05.html), 검색일: 2014. 8. 20).

있는데, 정부재정과 시장조달 재원 사이의 위험분산과 관리가 중요하고, 정부의 적절한 지급보증은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대상국의 소득 수준, 사업 분야 및 성격 등에 따라 차관, 협력 자금, 보증 등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발금융체제를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새로운 지원방식으로 제시되는 보증은 투자위험을 경감시켜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요 공여국의 보증 및 기타 개발금융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민관협력을 위한 전략적 패키지 차원에서 금융기관·기업 등 민간 자금이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PPP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EDCF의 개도국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정리스크 분담을 위한 EDCF 차관,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 참여 부분에 대해 EDCF 차관 또는 대외경제협력 자금을 다양화하고,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 수출금융 및 EDCF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2015년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은 신기후체제의 핵심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성공은 기후재원의 흐름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달려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의 투명성과 진정성이 먼저인가, 온실가스 누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닌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먼저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 2009년 코펜하겐에서와 같이 신기후체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재원과 관련된 세부 협상쟁점은 개발재원 논의와 유사하게 민간재원의 동원이다.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리는 마찬가지로이나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협상의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2010년 칸쿰 합의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에는 민간재원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원 조성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원 부담 비중, 기후재원에 포함되는 민간재원의 유형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는 민간 부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GCF 유치국으로서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를 주목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GCF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운영주체로서 설립되었으며, 기후재원의 장기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재원의 대부분이 ODA로 제공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GCF 역시 ODA 공여 채널의 하나로써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GCF를 다자채널 또는 글로벌펀드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주요 다자 협력기구로 지정하여 GCF에 대한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협상 전략

과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재원과 빈곤해소, 교육, 보건, 젠더 등 여타 목적의 개발재원과의 통계 측정상 분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기후변화 대응 강조로 인한 원조전환 가능성에 있는 바, 개도국의 우려를 인식하여 양자 ODA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의 양적 목표를 수립하기보다는 ODA 프로그램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주류화(mainstreaming)가 중요하다.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발금융 방식을 기후변화 사업 추진 시 시도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개발금융방식을 도입하는 상황으로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원 대상 국가의 위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개입을 통한 위험완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정책적 환경에서 가능한 개발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성공사례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개발금융방식을 구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구정환 외(2010)는 녹색기술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자금조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부재정 및 민간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녹색금융 도입 초기에 정부는 전액 보증을 제공하되 부분보증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 리스크를 민간 부문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재원 동원과 함께 개도국 내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개도국들은 해외로부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적, 정책적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역량이 제한적임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기후변화 관련 다자기금들은 개도국 내 투자환경 조성을 주요 지원 분야로 설정하였다. 정책일관성과 개발협력의 효과성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도입과 함께 개도국 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개입으로 조달한 민간재원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민간투자 유입을 통한 개발재원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6장 요약 및 결론



국제사회의 빈곤해소 및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ODA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0년 이후 빈곤해소 노력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는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재원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5년 이후 전 세계적인 불황을 비롯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여국의 ODA 예산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반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요 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공여국들은 정부예산 대신 낮은 금리로 국제자본시장에서 ODA 재원을 조달하기도 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개발프레임 도입을 앞두고 DAC는 Post-2015 의제를 지지하고, 공적 개발재원의 새로운 측정 방식, ODA 개념의 현대화를 위한 논의, 공여국의 노력과 수원국의 혜택을 반영하는 측정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확실하며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새로운 개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공적 자금의 역할과 다양한 지원 수단 마련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이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다양한 지원방식과 금융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DAC에서 논의되는

ODA 적격성 논의의 주요 쟁점이 개발금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수원국의 소득수준 및 지원 분야, 위험분담 수준에 따라 양허성 수준을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적정 금리를 설정하는 방식은 개발금융의 ODA 적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금융에 수반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 및 새로운 개발재원으로서 개발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Post-2015 체제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 재원 조성 논의와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개발 금융체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기후재원의 조성이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개발재원 마련과 동시에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개발금융 방식을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재원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OF와 민간재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재원 77.5%, OOF 9.4%로 그 비중이 DAC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고, 해외투자 확대에 의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 기업의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ODA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 출연과 시장차입을 통한 개발금융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금융 방식은 지원조건 측면에서 양허성 차관과 상업금융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운영전략, 지원시스템 구축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할 경우 원조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고, 중소득국 중심의 원조배분이 확대되어 ODA 정책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개발금융은 기본적으로 언타이드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업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ODA를 비롯한 공적 지원의 확대는 민간재원 동원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DAC의 ODA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지원방식과 수단에 대한 논란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이 공여국의 기여를 어떻게 고려하고 변별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금융을 확대할 경우 차관, 협력 자금, 보증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정리스크 분담을 위한 개발재원 운영전략과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기후재원은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로 부상할 것이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원 부담 비중, 기후재원에 포함되는 민간재원의 유형 등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GCF 유치국으로서 기후재원의 장기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GCF에 대한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도입과 함께 개도국 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개입으로 조달한 민간재원뿐만 아니라 순수한 민간투자 유입을 통한 개발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구정한·손동희·전용일. 2010.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의 자본조달역할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Vol. 19, pp. 659~688.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권 율·김한성·박복영·황주성·홍수연.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율·정지선·박수경. 2008.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통일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8-05.
- 김정해·손혁상·권 율·이원희·이창길. 2012.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02-07.
- 김태균. 2013. 「개발협력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ODA의 중심성: Post-2015 시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3, pp. 183~209.
- 손혁상. 2013. 『Post-MDGs 체제하의 개발재원 연구』. 외교부 용역 보고서.
- 유애라·정지선. 2014. 「무역원조(Aid for Trade)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주. 2013. 「Post-2015 시대 개발협력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3, pp. 67~89.
-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한국국제협력단.
- 정지원·강성진. 2012.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박수경. 2012. 「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서정민·문진영·송지혜. 2013.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

- 방안』. 연구보고서 13-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오태현·송지혜. 2012. 『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과제』. ODA 정책연구 12-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 혁. 2013. 『개발금융 도입을 통한 한국의 개발협력 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3, pp. 211~280.
- 한국수출입은행. 2014. 『EDCF 개발금융 지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월 16일)
- 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2013.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시행체제 및 시사점』. *EDCF Issue Paper*, Vol. 2, No. 2.

### [영문자료]

- AFD. 2013. Annual Report 2012. Paris: AFD.
- \_\_\_\_\_. 2014a. Annual Report 2013. Paris: AFD.
- \_\_\_\_\_. 2014b. “Presentation to Fixed Income Investors 2013.”
- Atisophon, V., J. Bueren, P. Gregory, C. Garroway, and J. P. Stijns. 2011. “Revisiting MDG Cost Estimates From a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Perspective.” OECD Development Center Working Paper, No. 306.
- Climate Investment Funds(CIF). 2013. *Private Funding in Public-led Programs of the CTF: Early Experience*.
-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2001. “Macroeconomics and Health: Investing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Report of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 Devarajan S., M. Miller and E. Swanson 2002. “Goals for Development: History, Prospects, and Cos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819.
- European Commission. 2013. *Post-2015: Global Action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European Report on Development 2013
- European Parliament. 2014. *Financing for Development Post-2015: Improving the Contribution of Private Finance*. Brussels: European Union.
- Expert Reference Group Meeting. 2013. “Background Paper No. 1.” (October)

- Fay, M. and T. Yepes. 200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What is Needed from 2000 to 2010?"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102. World Bank.
- Fideschik, M., R. Schaeffer, A. Adedoyin, M. Akain, T. Bruckner, L. Clarke, V. Krey, I. Savolainen, S. Teske, D. Urge-Vorsatz, and R. Wright. 2011. "Mitigation Potential and Costs," *In IPCC Special Report on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p. 791~864.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USA.
- GCF Secretariat. 2013. "Business Model Framework: Private Sector Facility." GCF/B.04/07.
- Girishankar, N. 2009. "Innovating Development Finance-From Financing Sources to Financial Solutions." CFP Working Paper Series, No. 1. World Bank.
- Greenhill, R., A. Prizzon and A. Rogerson. 2013. "The age of choic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new aid landscape." ODI Working paper 364. Results of ODA research presented in preliminary form for discussion and critical comment.
- Grown, C., C. Bahadur, D. Elson and J. Handbury. 2008. "The Financial Requirements of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M. Buvinc, A. Morrison, A. Waafus Ofosu-Amaah, and M. Sjoblom (eds.) *Equality for Women: Where do We Stand 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 3?* Washington D.C.: World Bank.
- Hynes, W. and S. Scott. 2013. "The Evolu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hievements, Criticisms and a Way Forwar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No. 1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3v1dv3f024-en>(검색일: 2014. 3. 02 ~ 11. 30.).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09. *World Energy Outlook 2009*. Paris: IEA.
- \_\_\_\_\_. 2010.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Scenarios and Strategies to 2050*.
- \_\_\_\_\_.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1*. Paris: IEA.
- \_\_\_\_\_.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Paris: IEA.
- IMF. 2013a. "Unification of Discount Rates Used in External Debt Analysis for Low-Income Countries."

- \_\_\_\_\_. 2013b. "Debt Limits in Fund Programs with Low-Income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2014. *The Future of UK Development Co-operation: Phase 1: Development Finance*. London: House of Commons.
-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o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L.Parry, O.F. Canziani, J.P.Palutikof, P.J. van der Linden and C.E Hanson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WG-IFR. 2009. "Report of the Informal Working Group on Interim Finance for REDD+ (IWG-IFR)." Discussion Document.
- Jachnik, R., R. Caruso, and A. Srivastava. 2014. "Estimating Mobilized Private Climate Finance: Methodological Approaches, Options and Trade-offs." OECD Research Collaborative on Tracking Private Climate Finance.
- JICA. 2012a. Annual Report. Tokyo: JICA
- \_\_\_\_\_. 2012b. "JICA's Private Sector Partnership Activities." Material presented at the Water Forum on the Business-based-Pro-poor Approach on Water and Sanitation for Better Sustainability on 14 March 2012.
- \_\_\_\_\_. 2013. *Annual Report*. Tokyo: JICA
- KfW. 2008. "Sri Lanka: DFCCIV - Promotion of the Private Sector" Ex-post Evaluation Report.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R-Z/Sri\\_Lanka\\_DFCC\\_IV\\_2008.pdf](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R-Z/Sri_Lanka_DFCC_IV_2008.pdf)(검색일: 2014. 7. 22).
- \_\_\_\_\_. 2011. "Rehabilitation Programme in Electricity Transmission II."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A-D/Aserbaidshan\\_Reha\\_Strom\\_2011.pdf](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A-D/Aserbaidshan_Reha_Strom_2011.pdf)(검색일: 2014. 7. 15).
- \_\_\_\_\_. 2013. Annual Report 2012 o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novation Works. Technology for Development. Frankfurt: KfW.
- Löwenstein, W. 2012. "Evaluation of Selected DEG Energy Sector Projects in Asia." KfW

- Manning, R. 2013. "OECD is Ignoring Its Definition of Overseas Aid." *Financial Times*. (April 9)
- McKinsey & Company. 2009. "Pathways to a Low-Carbon Economy: Version 2 of the Global Greenhouse Gas Abatement Cost Curve."
- Mirabile, M., J. Benn and C. Sangaré. 2013. "Guarantees for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1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4071x5b8f8-en>.
- OECD. 2011. "Measuring Aid: 50 Years of DAC Statistics 1961-2011."
- \_\_\_\_\_. 2012a. "2012 DAC HLM Communique."
- \_\_\_\_\_. 2012b. "New Directions in DAC Measurement and Monitoring of External Financing for Development."
- \_\_\_\_\_. 2012c. "Proposal for Clarification of Concessional in Character." DCD/DAC/STAT(2012)22
- \_\_\_\_\_. 2013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3 - Ending Poverty*. Paris: OECD.
- \_\_\_\_\_. 2013b.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 \_\_\_\_\_. 2014a.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TAD/PG(2014)1.
- \_\_\_\_\_. 2014b. *OECD Submission to the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 \_\_\_\_\_. 2014c. "The New Development Finance Landscape: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 Working draft presented at the OECD workshop on development finance on 25 June 2014.
- \_\_\_\_\_. 2014d. "The Arrangement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CIRRs)." <http://www.oecd.org/tad/exportcredits/cirrs.pdf>.
- OECD DAC. 1969. *Recommend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 \_\_\_\_\_. 2013. "Possible Update to Classification by Types of Finance: Revised Proposal."
- \_\_\_\_\_. 2014a. "Climate-Related Aid."
- \_\_\_\_\_. 2014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4*.

- \_\_\_\_\_. 2014c. “Development Finance - Modernizing ODA: Options for Modernizing the ODA Measure.”
- \_\_\_\_\_. 2014d. “Draft Summary Record of the 980th DAC Meeting.” DCD/DAC/M(2014)6/PROV.
- \_\_\_\_\_. 2014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Senior Level Meeting.” DCD/DAC/M(2014)3/PROV.
- \_\_\_\_\_. 2014f. “Modernizing the DAC's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DCD/DAC(2014)9.
- \_\_\_\_\_. 2014g. “Options on Concessionality.” DCD/DAC(2014)29.
- \_\_\_\_\_. 2014h. “Secretariat Report on ODA Loans in 2012.”
- \_\_\_\_\_. 2014i. “Targeting ODA towards Countries in Greatest Need.”
- \_\_\_\_\_. 2014j. “UK Discussion Paper on the ODA Eligibility of Private Sector Instruments.” DCD/DAC/STAT/RD(2014)S/RD6.
- \_\_\_\_\_. 2014k. “Possible New Measure of Total Support for Development: Options Regarding Peace and Security, Climate Change and Global Programmes.”
- \_\_\_\_\_. 2014l. “DAC High Level Meeting Communique”
- \_\_\_\_\_. 2014m. “The Where of Development Finance.” DCD/DAC(2013)29.
- OECD DEV. 2012. *Can We Still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rom Costs to Policies*. Paris: OECD.
- Olbrisch, S., E. Haites, M. Savage, P. Dadhich, and M. K. Shrivastava. 2011. “Estimates of Incremental Investment for and Cost of Mitigation Measures in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Policy*, Vol. 11, pp. 970~986.
- Riahi, K., F. Dentener, D. Gielen, A. Grubler, J. Jewell, Z. Klimont, V. Krey, D. McCollum, S. Pachauri, S. Rao, B. van Ruijven, D. P. van Vuuren and C. Wilson. 2012. Chapter 17 “Energy Pathway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 Energy Assessment. Toward a Sustainable Future*, pp. 1203~13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Laxenburg, Austria.
- 재인용: Roehrl, R. A. 2012.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for Rio 20+*.

*A Compon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SD21) project.*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Roodman, D. 2014. "Straightening the Measuring Stick: A 14-Point Plan for Reforming the Defini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Policy Paper 044.
- Spratt, S., and L. R. Collins. 2012.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for Development Additionality."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Stenberg, K., B. Johns, R. W. Scherpbier, and T. Tan-Torres Edejer. 2007. "A Financial Road Map to Scaling Up Essential Child Health Interventions In 75 Countri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pril, 85(4).
- Stevens, B., P. A. Schieb and M. Andrieu. 2006. "A Cross-sector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Global Infrastructures to 2030." In OECD, Infrastructure to 2030: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Paris: OECD.
- UN. 2002.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 2012a. *The Future We Want.*
- \_\_\_\_\_. 2012b. *Resilient People, Resilient Planet: A Future Worth Choosing.*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 New York: UN.
- \_\_\_\_\_.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 \_\_\_\_\_. 2014. "Introduction and Proposed Goals and Targe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UNDESA. 2011.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11: The Great Green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 UNEP. 2011.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1992.
- \_\_\_\_\_. 2007. Investment and Financial Flows to Address Climate Change. Bonn.
- UN Millennium Project. 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UN System Task Team. 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3.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Global Investment Requirement Estimates.”
- Vanheulekom, J., S. Migliorisi, A. Herrero, N. Keijzer and E. Spierings. 2012. *Reporting on Development: ODA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Study Commissioned by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aastricht: ECDPM.
- World Bank. 2010. “The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New Methods and Estimates.”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2013. *Financing for Development Post-2015*.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0. “Constraints to Scaling Up the Health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osting and Financial Gap Analysi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Taskforce on Innovative International Financing for Health Systems.”

[온라인 자료]

- 일본 외교부 ODA 온라인 백서. [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13/html/honbun/b2/s2\\_5\\_1\\_05.html](http://www.mofa.go.jp/policy/oda/white/2013/html/honbun/b2/s2_5_1_05.html)(검색일: 2014. 8. 20).
- AFD 홈페이지. <http://www.afd.fr/lang/en/home/outils-de-financement-du-developpement/prets>(검색일: 2014. 5. 29).
- HeidelbergCement 홈페이지. [www.heidelbergcement.com/](http://www.heidelbergcement.com/)(검색일: 2014. 3. 02 ~ 11. 30.).
-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external/np/pdr/conc/>(검색일: 2014. 3. 02 ~ 11. 30.).
- KfW 홈페이지.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검색일: 2014. 3. 02 ~ 11. 30.).
- OECD Aid statistics/ Statistics on resour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Table 1~38.

<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4. 3. 02 ~ 11. 30.).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4. 3. 02 ~ 11. 30.).

PROPARCO 홈페이지. <http://www.proparco.fr/lang/en/>(검색일: 2014. 3. 02 ~ 11. 30.).

UN 홈페이지. <https://papersmart.unmeetings.org/secretariat/eosg/un-climate-summit-2014/statements/>(검색일: 2014. 3. 02 ~ 11. 30.).

UN-REDD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un-redd.org/AboutREDD/tabid/102614/Default.aspx>(검색일: 2014. 3. 02 ~ 11. 30.).

World Bank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ida/borrowing-countries.html>(검색일: 2014. 3. 02 ~ 11. 30.).

World Bank-UNDP Climate Finance Options 홈페이지. <http://www.climatefinanceoptions.org/>(검색일: 2014. 3. 02 ~ 11. 30.).

Climate Funds Update 홈페이지. <http://www.climatefundsupdate.org/data>(검색일: 2014. 3. 02 ~ 11. 30.).

“KfW loan to help solve power problem south”, Azernews, 2007. 11. 28. <http://www.azernews.az/azerbaijan/186.html>(검색일: 2014. 3. 02 ~ 11. 30.).

## 부 록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투자 수요
2. 개발금융을 활용한 사업 사례
3. 청정기술기금(CTF) 주요 사업의 자원  
조달 현황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투자 수요

구분	출처	추정치	비고
저탄소 경제	UNDESA, WESS(2011)	1조 1,000억 달러	지출의 60%는 개도국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UNEP(2011)	전 세계 GDP의 2%	기간: 2000~년
	PBL(2009)	- 4,000억~1조 6,000억 달러/년 - 300억 달러/년 - 500억~1,600억 달러/년	- 2000~50년 동안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수요 - 2000~50년 사이에 농업용지 사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데 필요한 추가 투자수요 -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투자수요
해양	FAO and World Bank(2009)	- 460억~900억 달러/년	경제적 손실
	UNDP-GEF(2012)	- 350억 달러/년	
	CBD(2012)	- 390억 달러/년	기간: 2013~20년
생물다양성	CBD(2012)	- 1,530억~4,360억 달러/년	
산림	UNFF(2012)	700억~1,600억 달러/년	
	UNFCCC(2007)	434억 달러/년	
	IWG/IFR(2009)	40억~50억 달러/년	기간: 2010~15년
	CBD(2012b)	400억 달러/년	
기후 변화	감축	IEA(2009)	- 전세계: 8,800억 달러/년 - 개도국: 3,770억 달러/년
		McKinsey & Co.(2009)	- 전세계: 1조 2,150억 달러/년 - 개도국: 6,950억 달러/년
		UNFCCC(2007)	- 전 세계: 3,800억 달러/년 - 개도국: 1,770억 달러/년
			- Olbrisch <i>et al.</i> (2011) - 감축 범위는 모두 다름 - 기간: UNFCCC(2030년), McKinsey (2026~30년 평균), IEA(2021~30년 평균)

부록표 계속

구분	출처	추정치	비고
적응	World Bank(2010)	- 700억~1,000억 달러	- 기간: 2010~50년 - 2050년에 2도 상승에 적응
	UNFCCC(2007)	- 전 세계: 490억~1,710억 달러/년 - 개도국: 270억~660억 달러/년	- 기간: 2030년
에너지	Roehrl(2012)/ Riahi <i>et al.</i> (2012)	- 최저소득인구: 16억 달러 - 5,500억~1,300억 달러	- GEA 시나리오에 기초 - 기간: 2030년 - 전기 및 현대화된 조리용 연료의 보편적 사용
		3,000억 달러/년 이상	- GEA 시나리오에 기초 - 기간: 2050년 - 에너지 교역 제한,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 및 회복력 증가 - 전기 부문의 인프라 향상을 위한 투자 추정
		2,000억 달러/년	- GEA 시나리오에 기초 - 기간: 2030년 - 대기오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정투자 수요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50% 감소
		4,650억 달러/년 이상	- GEA 시나리오에 기초 - 기간: 2050년/2100년 - 산업화 이전 수준의 기온에서 2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세계평균기온 제한 가능성 50% 이상
	IEA(2012)	490억 달러/년	- 기간: 2010~30년 -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을 위해(Energy for All 시나리오)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보편적 전기 사용을 위해 9,150억 달러가 필요 - 위생적인 조리시설 사용을 위해 950억 달러 필요
	IEA(2011)	- 5,000억 달러/년	- 재생에너지 관련 - 전력 부문의 투자수요 - 대기 중 CO <sub>2</sub>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1,500억 달러 추가 필요(건물, 산업, 교통 제외)

부록표 계속

구분	출처	추정치	비고
	Fideschik <i>et al.</i> (2011)	- 기초 시나리오: 1,360억 달러/년 - 대기 중 CO <sub>2</sub>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 5,100억 달러/년	- 기간: 2010~20년
		- 기초 시나리오: 1,490억 달러/년 - 대기 중 CO <sub>2</sub>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 7,180억 달러/년	- 기간: 2021~30년
	World Bank(2006)	340억 달러/년	- 보편적인 전기 사용 - UN이 정한 2030년까지의 에너지효 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2,500억~4,000억 달러의 추가 투 자 필요
		1,900억 달러	- 재생에너지 - 기간: 2010~30년 - 대기 중 CO <sub>2</sub>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

자료: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 개발금융을 활용한 사업 사례

### 1) 독일 DEG 파키스탄 카디르푸르(Qadirpur) Engro 가스발전소 투자사업

파키스탄은 전력공급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전력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지만 에너지 분야 개혁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많은 전력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다. 편자브 지역에서는 로드셰딩(Load Shedding: 전면 정전을 막기 위한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해 20시간 동안 전력과 물의 공급이 중단되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ngro Energy Limited(Engro)는 IFC, 네덜란드의 FMO, OFID(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프랑스의 Proparco, 스웨덴의 Swedfund, 독일의 DEG가 조성한 1억 5,000만 달러의 외부융자(external financing)를 받아 카디르푸르에 220MW 규모의 가스발전소를 건설했다. DEG는 총 외부융자액의 13%를 투자하였고 유럽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았다. 발전소의 지분 중 95%는 Engro Corp.가, 나머지 5%는 IFC가 가지고 있다.

카디르푸르 가스전(gas田) 근방에 위치한 Engro 가스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연간 51만 66톤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또한 2010년 기준 1,197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파키스탄의 전력난 완화에 기여했다. Engro 가스발전소는 민간이 소유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가 직접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고용창출과 발전소 수익의 사회환원으로 개발효과를 발생시킨다. Engro 가스발전

소는 42명의 정규직과 100명의 계약직을 고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였다. 또한 Engro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두고 수익의 1%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데 활용한다. Engro Foundation은 인근 마을 학교들의 시설을 확장하고 교사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교육사업과 이동식 의료서비스 사업, 도로포장과 하수 및 관개시설 확대 등의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EG는 GPR이라는 개발사업 평가틀을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내부 및 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Engro 가스발전소 투자사업의 경우 발전소의 사회공헌이 높게 평가되어 외부평가 중 개발효과 부문에서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료: Löwenstein(2012), pp. 1~14.

## 2) KfW 복합금융 사례 - 스리랑카 상업은행 지원

2000년대 중소득국가 지위를 획득한 스리랑카는 엄격한 금융규제와 과도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로 금융환경이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스리랑카의 금융상품은 이자율이 높고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 자금조달을 원하는 민간기업은 외국자본이나 원조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KfW는 금융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를 목표로 2006년 스리랑카 상업은행인 DFCC Bank에<sup>86)</sup> 총 2억 200만 유로를 지

---

86) DFCC Bank는 195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의 상업은행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개발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은행 지분의 대부분을 민간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방향은 스리랑카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 덕분에 DFCC Bank는 높은 수익과 낮은 리스크를 좇음과 동시에 개발정책목표 실현을 추구한다. 설립 당시 자문을 제공했던 세계은행이 DFCC Bank를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개발은행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원하였다. 그중 510만 유로는 독일 ODA 예산을 활용한 복합금융 방식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 1,510만 유로는 KfW가 시장에서 조달한 재원을 활용하였다.

DFCC Bank는 343건의 대출과 임대를 통해 스리랑카의 민간부문에 재융자(re-financing)하였다. 대출의 평균 상환기간은 대략 5.5년이었고 임대의 경우 4년이였다. 산업 분야별로는 식품산업에 15%, 인쇄업에 12%, 숙박업 및 요식업에 11%, 농업과 고무가공업에 각각 10%의 자금이 투입되어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자국 금융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스리랑카의 민간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장기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fW는 이 사업으로 3,93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로 했던 3,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초과달성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스리랑카 경제의 근간인 영세 및 중소기업이 주 융자대상이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원 지역이 콜롬보와 주변지역에 집중되었고 기업 역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KfW는 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후 지방의 영세,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자료: KfW(2008), "Sri Lanka: DFCC IV – Promotion of the Private Sector" Ex-post Evaluation Report.<sup>87)</sup>

---

87)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R-Z/Sri\\_Lanka\\_DFCC\\_IV\\_2008.pdf](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R-Z/Sri_Lanka_DFCC_IV_2008.pdf)(검색일: 2014. 7. 22).

### 3) KfW 저금리 차관 사례 - 아제르바이잔 송전망 재건 프로그램

고장이 잦고 비효율적인 송전시설은 20세기 말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독일은 아제르바이잔과의 개발협력에 있어 에너지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송전망 재건사업 투자를 추진하였다. 2000년 1차 송전망 재건사업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고압송전망에 중점을 둔 2차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KfW는 상환기간 12년에 낮은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총 1,534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저금리 차관으로 지원하였으며, 시장조달 없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특별기금 등 독일의 ODA 예산으로 투자금을 충당하였다. 사업 시행은 아제르바이잔의 전력공기업인 Azerenerji가 담당하여 송전선로를 확충하고 송전용량을 늘리는 재건사업들을 추진하였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최신기술과 부품을 활용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력누수를 최소화했다. 특히 운용에 필요한 전력소모와 정전 및 사고빈도를 큰 폭으로 줄여 Azerenerji의 재정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송전설비 확대는 부하의 중심이었던 수도 바쿠와 인근 압세론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요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을 활성화시켜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2차 송전망 재건 프로그램은 아제르바이잔이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처음으로 서구의 기술과 안전기준을 도입한 사례로서 향후 모든 전력설비 건설에 현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자료: KfW(2011), Rehabilitation Programme in Electricity Transmission II<sup>88</sup>; “KfW loan to help solve power problem south,” Azernews, <http://www.azernews.az/azerbaijan/186.html>.

88)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A-D/Aserbaidshan\\_Reha\\_Strom\\_2011.pdf](https://www.kfw-entwicklungsbank.de/migration/Entwicklungsbank-Startseite/Development-Finance/Evaluation/Results-and-Publications/PDF-Dokumente-A-D/Aserbaidshan_Reha_Strom_2011.pdf) ; “KfW loan to help solve power problem south”, Azernews, 2007. 11. 28 (<http://www.azernews.az/azerbaijan/186.html>)(검색일: 2014. 7. 15).

#### 4) 프랑스 AFD 모잠비크 상업투자은행 보증 사례

모잠비크의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의 낙후로 인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용자의 혜택이 대기업과 소액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소용 기업에만 집중돼 중소기업은 오히려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AFD는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모잠비크에서 두 번째로 큰 상업은행인 BCI(Banco Comercial e de Investimentos)와 차관 및 보증 제공 협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Proparco를 통해 BCI에 2,0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다. 대규모의 차관지원 덕분에 BCI의 자본력이 강화되었고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가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대출 손실을 총 200만 달러까지 보장하는 포트폴리오 보증(portfolio guaranty)을 제공한다. AFD는 1만 유로부터 30만 유로까지의 용자액, 1년에서 5년 사이 만기기간의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부동산이나 술, 담배, 도박 등 문제사업과 무관한 대출에 한해 각 대출마다 발생한 손실의 50%를 보장한다.

AFD의 지원은 BCI의 대출손실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BCI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금융서비스 공급의 증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이 보증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이 보장되는 용자액의 범위를 중간규모로 제한하였다. AFD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모잠비크의 내수진작과 수출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AFD 홈페이지(접속일: 2014. 5. 25), <http://www.afd.fr/lang/en/home/pays/afrique/geo-afri/mozambique?actuCntId=51153>.

## 5) 프랑스 AFD 환경위험관리 사례: 카메룬 댐 건설-국립공원 설립 사업

2012년 AFD는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 함께 카메룬의 공기업인 전력개발공사(EDC: Electricity Development Corporation)가 동부 지역에 60억 리터 규모의 룡팡가 댐을 건설하는 사업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룡팡가 댐을 활용한 수력발전을 통해 최대 500만 명의 주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댐이 건설될 지역은 고릴라와 침팬지 등의 영장류를 포함한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였다. AFD는 환경 측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근에 국립공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즉, 생태계와 자연유산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에 고릴라와 침팬지의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회 측면의 위험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650km<sup>2</sup>에 달하는 룡팡가 댐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수를 50가구 수준으로 최소화하며 건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위험감소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여 총 3억 유로의 사업비용 중 환경·사회관리계획과 이주·보상계획 관련 비용이 2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750만 유로는 EDC와 관련 행정기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활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EDC의 내부운영구조 개혁을 지원했고 산림야생동물부(Ministère des Forêts et de la Faune)가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현지 NGO가 EDC의 보상 및 복구 활동을 감시하도록 지원하고 컨설턴트를 통해 환경·사회관리계획과 이주·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자료: AFD 홈페이지(검색일: 2014. 5. 24); World Bank 홈페이지,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MDK:23153690~menuPK:2246551~pagePK:2865106~piPK:2865128~theSitePK:258644,00.html>(검색일: 2014. 9. 22).

## 6) PROPARCO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분투자 사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시멘트 산업은 생산설비의 낙후로 인해 국내 경쟁력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시멘트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시멘트 시장의 문제점은 건설업의 침체로 연결되어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세계 4대 시멘트 기업인 하이델베르크시멘트는 아프리카에서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인 Scancem International AG의 자본을 1억 8,000만 달러 증가시키기로 결정한다. 이에 IFC가 1억 1,000만 달러, Proparco와 IFC Asset Management Company<sup>89)</sup>가 각각 3,500만 달러의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감행한다. 하이델베르크시멘트는 마련한 자본을 활용하여 IDA 차관을 받는 최빈국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이 중 2010년 초기유입된 6,000만 달러는 라이베리아의 시멘트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증자액은 2013년까지 가나, 토고, 가봉 지역의 시멘트 공장 건설에 추가로 투입되었다.

Proparco는 하이델베르크의 지분에 투자하여 시멘트 생산량 증가에 따른 현지 시멘트 가격 하락에 기여하였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건설업을 활성화시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높은 인구증가율에 대응한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멘트 공장 건설 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시켜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PROPARCO 홈페이지<sup>90)</sup>; HeidelbergCement 홈페이지(검색일: 2014년 5. 28).

89) IFC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제3자의 자본을 모집하여 개발사업 추진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IFC의 산하기관이다. Scancem International AG 투자에 활용한 IFC Africa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Fund(ALAC Fund)를 포함하여 총 61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90) [http://www.proparco.fr/lang/en/Accueil\\_PROPARCO/Activite/Projets\\_PROPARCO/Tous-les-projets/ASS-2010-Ciment-HeidelbergCement](http://www.proparco.fr/lang/en/Accueil_PROPARCO/Activite/Projets_PROPARCO/Tous-les-projets/ASS-2010-Ciment-HeidelbergCement)(검색일: 2014. 5. 28).

### 3. 청정기술기금(CTF) 주요 사업의 자원 조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지원 국가	시행 기관	CTF 자금	MDB 차관	수원국 부담	기타 기관 (양자 기관 포함)	수원국 공공 재정기관	민간 자금	국제은행 대출	총 사업 규모	민간 자금 (출자, 대출) 비중
Strategic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콜롬비아	IDB	20,0	300,0	203,0	-	-	148,1	-	671,1	22,1%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	이집트	IBRD	150,0	70,0	55,0	371,0	-	100,0	100,0	846,0	23,6%
Geothermal Clean Energy Investment	인도네시아	IBRD	125,0	175,0	275,0	-	-	-	-	575,0	-
Urban Transport Transformation	멕시코	IBRD	200,0	150,0	1,093,0	-	-	732,0	-	2,175,0	33,7%
Efficient Lighting and Appliance Project	멕시코	IBRD	50,0	250,0	102,7	7,1	127,0	176,0	-	712,8	24,7%
Renewable Energy Program, Proposal III	멕시코	IDB	70	220,0	-	-	250,0	1,960,0	-	2,500,0	78,4%
Ouarzazate CSP (Regional -MENA)	모로코	IBRD AfDB	197,0	416,0	190,0	446,0	-	169,0	-	1,418,0	11,9%
ESKOM Renewables Support Project	남아공	IBRD AfDB	350,0	520,0	44,0	396,0	-	-	-	1,310,0	-
Private Sector RE and EE Project	터키	IBRD	100,0	497,0	-	-	127,0	431	-	1,155,0	37,3%
One Wind Energy Plan	모로코	AfDB	125,0	448,0	76,0	570,0	-	1,203,0	-	2,422,0	49,7%
합계			1,387,0	3,046,0	2,038,7	1,790,1	504,0	4,919,1	100,0	13,784,9	35,7%

자료: CIF(2013), p. 7.

## Executive Summary

### Study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ost-2015 Er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one Jung, Yul Kwon, Jisun Jeong, Ju Young Lee, Jihei Song, and Aila Yoo

With only a year left on the timeframe set for the conclus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new framework which will set the tone fo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scene after 2015. Centering on the values of human rights, equity, and sustainability,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is expected to show a mid- to long-term vision in tackling global challenges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s its particular focus o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for the new goals in the Post-2015 era. As a means of implementati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s deemed central to achieving the goals. Consider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while new challenges arise, additional financing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pursuit of renewed development goals. As a consequence, Korea must expedite progress in expanding the development agenda as well as increasing finance for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is policy paper aims to review the discussion on increasing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and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issue. For these purposes, this report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hronology of discussions on SDGs and analyzes international observations on the scale of finance necessary for achieving the SDGs. Then we further explore some technical detail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cluding the modernisation of the ODA definition and new measur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aper moves on to seek various ways of utilizing public support to stimulate private sector resource mobilization. By conducting case studies on development finance mechanism of the German KfW Development Bank and France Development Agency (AFD), the report provides insights on additional types of financing, such as blended financing, guarantees, capital subscription, and mezzanine finance.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efficiently raise resources to finance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First, greater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xpanding and utilizing other official flows(OOF) as well as ODA instruments from the view point of private resource mobilization. This effort should not become a way to avoid the pledges to increase ODA volumes, but rather an additional form of effort to effectively incentivize and leverage private sector

investment for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lso,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such as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need to propose and share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and wide-ranging expertise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Lastly, the paper suggests measures to connect climate finance with financing for development, which is imperative to the post-2015 framework.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세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자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연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용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울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근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근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희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중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규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곽성일 ·박재은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중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용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근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협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근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울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감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교회체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관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급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교회체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 정지원(鄭智元)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사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식품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現, E-mail: jju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공저 2013)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공저 2013) 외

## 권 율(權栗)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하와이 East West Center(EWC) 방문학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장  
(現, E-mail: ykwon@kiep.go.kr)

### 저서 및 논문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공저 2012)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공저 2013) 외

## 정지선(鄭至善)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학사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국제개발학 석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sjeo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공저 2011)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공저 2013) 외

## 이주영(李珠榮)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경영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ylee@kiep.go.kr)

### 저서 및 논문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공저 2011)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공저 2013) 외

## 송지혜(宋智慧)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영어학부 졸업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국제개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jhso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공저 2011)  
『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과제』 (공저 2012) 외

## 유애라(俞愛羅)

서강대학교 영미문화/경제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ailayoo@kiep.go.kr)

### 저서 및 논문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공저 2013)  
『APEC 역내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공저 2013) 외

연구보고서 14-12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14 FAX: 044)414-1122,1199

**인쇄** (주)에원기획 전화 745-8090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ISBN 978-89-322-1515-0 94320

978-89-322-1072-8 (세트)

정가 7,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_____ (한문) _____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_____
담당자 연락처	전화 _____ E-mail : _____ FAX _____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_____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특기사항

# Study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ost-2015 Er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one Jung, Yul Kwon, Jisun Jeong,  
Ju Young Lee, Jihei Song, and Aila Yoo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프레임 도입을 앞두고, 국제사회는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재원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적 개발재원의 새로운 측정방식과 ODA 개념의 현대화를 위한 논의, 공여국의 노력과 수원국의 혜택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발재원 확대 조성 논의에 대한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공적 자금의 역할과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새로운 개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수요 및 조달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도입 방안과 적정 관리체계, 개도국 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등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부응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5150 9 4 3 2 0  
9 788932 215150  
ISBN 978-89-322-1515-0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